

자료집 기록		
등록일	수	번호
W.S	01	76

96 3차 국제연대포럼

아시아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

-역할극 형식의 퍼널토론-

1996. 6. 3

참여연대

이 자료집은 국제연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96-3차 자료집입니다.
아시아와 좋은 이웃으로 사귀기위하여 아시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 기원빌딩 4층, 140-012 tel:796-8364/ fax:793-4745
천리안/나우누리/하이텔 ID:PSPD

G1.49

목 차

-발제문-

- 발제-1/ 서구입장-보편성
- 발제-2/ 아시아적 인권개념
- 아시아 NGO 입장

-참고 자료-

• 인권에 대한 아시아의 시각(국문)	이시 가이/김한균옮김	1
• 93년 방콕 선언문 및 세계인권대회 선언문 쟁점 요약 (특수성과 보편성과 관련) -「유엔세계인권대회자료집」		3
• 인권에 대한 아·태지역 비정부 조직 선언(방콕선언)		6
• 중국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창작과 비평」94년 가을-	백영서	8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 -「민주법학」7호	이대훈	16
• 인권운동과 보편적 인권규범(1) 그 7대 딜레마 -「민주법학」9호	이대훈	28
•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 in Asian Human Rights : Socio-Cultural and Political Aspects	Mushakoji Kinhide	40
• Human Rights : Asia and the West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Michael Freeman	50
• Asian Perspectives on Human Rights(영문)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Yash Ghai	91
•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 : Implementation of HR in Different Socio-Cultural Contexts -「Human Rights Quarterly」1994. vol.16	Christina M. Cerna	68
• Peace,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 From Grassroots Perspectives in Asia -「Initiating HR Education at the Grassroots」- ACFOD	Clarence J. Dias	75
		95
		82

서구 입장의 옹호 :

인권은 보편적, 객관적, 불가분적, 상호의존적 개념이다

정리 : 이윤경

1. 인권의 보편성이란?

인권의 기초는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지닌다는 것이고, 인권의 이상은 공포와 필요로부터 해방된 인간이다. 즉, 모든 인간은 자신의 성,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 없이 자신이 인간이라는 존재 이유만으로 권리들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J. Nickel, *Making Sense of Human Rights*)

그러나 이는 인간과 국가 권리 사이에 대한 개념 규정으로서 그 어떤 완벽한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국가 권리의 통제와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인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생명, 정의, 자유에 대한 권리들은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은 분명 “근대적” 사상과 제도에 근거한다. (예: 평등한 투표를 통한 참정권, 결혼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권 등...) 따라서 인권의 보편성은 역사성이라는 개념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인권은 특정 시대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인 것이다.

2. 공동체 정신의 전통, 동양의 전유물 아니다.

서구에도 가정, 기존의 도덕(특히 성윤리), 재산권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인권주의와 개인의 권리, 평등권,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인권주의가 있다.

서구 자유주의 전통에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정신이 있으며, 서구의 인권 개념이 개인의 사회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 계급의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맑스주의 전통도 있다.

민주주의가 다원주의, 관용, 열린 마음과 정신이라면 서구는 이런 틀을 통해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해 나간다.

3. 1948년 12월 10일 국제사회가 공인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합의였다.

국제사회가 승인하고 보편적으로 선언한 이를 권리의 초석은 세계 2차대전 이후-1980년대 이전에 놓여졌다. 이는 동-서 양진영간 경쟁과 서방 국가들의 눈부신 경제성장이 국제사회를 특징짓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동서간 이념 대립으로 양 진영은 인권의 우선 순위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했다. 서방은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 분야에서 의무 조항을 수립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사회·경제적 권리가 인권 분야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며 이를 권리가 시민·정치적 권리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제3세계회의"(Third World Caucus)가 유엔에서 출현하면서 이들은 민족이 지닌 권리 가운데 개발에 대한 권리가 인권의 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인권 논의에 새로운 해석을 포함시켰다.

냉전시기 동안 수백만 사위들에게 최대 비극이었던 자본주의-사회주의 진영간 대립은, 아이러니할 정도로, 어떤 특정 부분만 강조하지 않고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에 관한 한) 인권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인권헌장이 출현하는 데에 기여한 것이다.

(Eric Sottas)

4. 인권의 보편성은 1993년 비엔나 인권대회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비엔나 선언 행동계획 제 5 문단은 다음과 같이 인권의 보편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고, 상호의존적이며 연관되어 있다. 국제 사회는 인권 문제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공명정대하게 다뤄야 하며, 모든 인권에 같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나라와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 문화, 종교의 전통을 고려하면서도 국가는 정치, 경제, 문화 제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국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Jack Donnelly가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의 영역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 새로운 정치 세력과 진서의 출현, 과학기술의 발달, 새로운 억압의 형태, 그리고 인권 운동의 성패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고 확장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권 보편성의 확대 과정이다.

5. 아시아의 특수성 강조에 대한 반론

(1) 아시아 국가들이 인권의 문화적 상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나라 정부의 목소리이자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사람들-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 원주민들, 소수 민족, 무상하는 중산층-의 입장이 아니다.

(2) 정부 또는 국가가 공동체와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정부는 경제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3) 아시아의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면서 유교를 인용하는데, 유교에서는 법이나 억압에 의한 정치가 아닌 최소한의 권력과 기능을 가진 정부, 군주에 의한 도덕정치를 역설한다. 또한 부도덕한 정치에 맞서는 저항을 옹호하는 가르침도 있다.

(4) 아시아 문화에서는 대결과 쟁투가 아닌 조화와 합의를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아시아 정부들은 비판세력에 대해 그토록 관용을 보이지 못하고 극심한 배제와 탄압으로 일관하는가?

(5) 사실은 경제 개발과 정치적 안정 또는 국가 안보라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의 특수성이라는 논리를 개발해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른바 아시아적 인권개념

김 한균

인도의 어둡고 비좁은 숨막히는 기내공장에서 노동하는 여섯 살 어린이에게 아동복지의 인권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보편적 인권을 누리는 당신들은 이러한 열악한 인권현실을 개탄해 마지않는다.

그러나 생각해 보았는가, 이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노동이다. 일이 있으면 끊어죽는다. 그러나 또한 생각해보았는가. 이들을 전대서 민족으로 내몰리도록 과거식민지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린 이들이 누구인지?

지금도 여전히 그 땅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시신들의 땅에는 노저히 둘 수 없는 궂해진입을 짚고 오는 이들이 누구인지?

북한의 아낙네가 너무껍진?: 벗기 연명하고 있다. 물론 놀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내세우는 당신들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현실에 분노한다. 그러나 생각해보았는가? 그들로 하여금 이념과 쌀을 맞바꾸라는 강요에 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끊수임에 내몰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미국에서 투옥된 사회주의운동가에 대해 중국이 서방을 요구한다면? 그 운동자를 탈출시키 중국에 소집하여 영웅으로 찬양한다면?

당신들의 보편적 인권이라 과연 무엇인가?

1. 인권의 보편성? - 서구적 인권개념에 대한 도전

1. 인권은 역사, 문화, 종교, 정치, 경제적 배경을 뛰어넘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 해당한 가치기준일 수 있는가? 인권의 보편성은 구체적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려는 인권침해자들에게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원칙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다는 점에 실천적 의의가 있다.

2. 하지만 진실로 인권에 대한 보편적 합의가 존재하는가? 기존의 국제인권규범들의 인권목록은 주로 기독교문화권의 제1세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보편적이라 주장되는 인권규범은 그 자체로서 서구적인 하나의 특수한 인권개념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아시아적 또는 제3세계적 인권개념도 하나의 인권개념으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3. 실제로 서구에서의 보편적 인권개념논의의 배경에는 서양사회의 문명만이 진정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 평등, 자유의 가치를 지니며, 다른 문명사회들은 서구가 이를 전파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 특히 동양과 동양인에 대한 서구인들의 천박한 인식수준과 시각 - 동정과 신비화와 무지의 결합이야말로 그릇된 제국주의적 인식들이 아닌가?

그러나 인권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한 사회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다양한 인권논의들을 통해 확인되어 왔다. ‘인권은 보편적이다. 그러나 한 사회의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는 전통적 선언들은 결국 인권의 보편성이 전혀 현실적인 개념이 못된다는 사실상의 한의에 다름아니지 않겠는가?

4. 만약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는 인권의 보편성을 옹호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불가침의 인권들을 제시하려 한다면, 핵심적 인권과 그에 미치지는 못하는 인권을 어떻게 구분지을 수 있겠는가? 이미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을 포기하고 인권의 보편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에 다름아니지 않겠는가?

5. 또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은 현실적으로 정치체제와 이념을 뛰어넘는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예컨대 정작 인권논의를 주도하는 인권운동단체들에서도 남한사회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의 보편적 적용은 어렵지 않게 인정되지만, 북한사회의 인권문제를 고려할 때는 체제의 특수성을 전제하려는 경향이 엄연히 있지 않은가?

6. 그리고 경제상상과 서구사회에서 형성되어온 인권목록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경제성장과 인권실현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보편적 인권논의의 요청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구산업사회 형성과정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어린이, 여성, 수령자의 노동착취,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민지에 대한 수탈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전히 제1세계국가들에게 제3세계는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공해산업을 얼마든지 가능시킬 수 있는 대상일 뿐이다. 그렇다면 서구사회로부터 경제개발과정에 있는 아시아국가들의 정치경제현실에 대한 인권차원의 논의는 비현실적이며 자기보증적이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답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원칙의 유지는 어려울 것이다.

2. 아시아적 인권개념 논의의 배경

현대의 인권논의에서는 서구사회로부터 비롯된 개인적 인권개념의 전통에 맞서는 아시아 고유의 인권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시아적 인권개념이라는 또 하나의 시각은 아시아의 문화와 현실에 근거를 둔 주장이어서 더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의 핵심은 서구사회에서 형성된 인권은 개인주의에 더불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아시아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서구적인 국제인권규범을 통해 서구적인 가치규범의 확산이 도보될 때, 반드시 주권침해를 결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경제적 낙후성은 서구사회에서 강조되는 대부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무의미하게 한다.

또한 일부 아시아지역 정부들은 서구사회의 인권증진에 대한 압력을 서구제국의 세계적 주도권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서구적 가치의 보편화로써, 부분적으로는 아시아국가와 정치체계의 탈동양화로써 수행된다.

3. 이른바 아시아적 인권개념의 내용

3.1 인권의 국내관할 (domestic jurisdiction)

인권은 국가주권속에 암축되어 있고, 한 국가의 인권문제에 대한 처리는 다른 국가나 국제사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입장은 인권은 국제적 문제이며 대규모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국내문제에 개입하여 구제해야 한다는 인권에 대한 현대의 시각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정부는 인권문제는 각국의 주권안에서의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1993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중국대표는 비엔나세계인권대회가 인권실현의 기반인 유엔헌장과 국제법규에 포함된 국가주권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국가주권이 완전히 존중될 때만이 인권실현도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권상황의 전개는 개별국가의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의해 유과이 그려지는 것이며, 따라서 역사적 배경, 사회체제, 문화적 전통과 경제발전정도의 차이로 인해 각국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행에는 편차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3.2 인권의 상대성 (relativity of rights)

“인권이 본질에서 보편적이지만, 국제규범형성의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과정의 배경을 고려해야하고,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민족적 지역적 특성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 (The Bangkok Govermental Declaration)

인권개념에 대한 상대적 견해에는 두가지 중요한 논거가 있다. 첫째 정치적 안정의 유지, 둘째 경제성장의 우선이나. 인민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국가의 안정과 생산력의 향상이 야말로 인민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는 경제개발에 놓여진다. 이는 경제개발에는 그것이 추구될 수 있는 안정적 정치구조와 현실적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잠정적인 제한이 뒤따르기 마련임을 의미한다.

4. 개방된 인권개념과 구체적 인권실현

더 이상 서구사회에 인권논의가 독점되어서는 안된다. 서구적인 이른바 보편적 인권개념은 서구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권력변동과 경제관계의 역사적 발전과 궤를 같이 해 오면서 모습을 갖춰 온 것이다. 그러나 서구역사에 비추어보아도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의 주장은 유지되기 힘들다. 따라서 서구사회 나름대로의 당면한 인권과제에 관한 논의가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인권논의를 특징지울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인권은 미래로 열린 개념이다. 이제까지의 서구사회에서의 논의로써 인권목록이 완결되는 않는다. 모든 세계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인권논의를 통해 그 내용과 구체적 실현방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개방된 문제장소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권을 부인하는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다. 빈곤앞에서는 인권도 인간의 존엄성도 설자리를 잃게 된다. 바로 아시아국가들의 당면과제는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안정이다. 그 속에서 정치적 시민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도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나가는 것이다.

다시말해 인권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이다. 정치경제의 핵심에 인권논의를 위치시켜야 한다는 명제는 정치경제적 특수성을 떠난 보편적 인권논의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에 대한 반증에 다름아니다.

물론 아시아지역에서 계속되는 – 그것이 문화적 요인, 정치적 요인 그리고 외세의 요인이든간에 – 어악적 현실은 이미 국내법적으로도 불법한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인권개념이 아닌, 국내법원칙에 만하는 불법현실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한 사회의 불법현실개선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도 이러한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보편적 인권개념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에 대한 NGO의 입장 및 의견 **

- 김 은영

[아시아 정부들이 특수성을 들고나온 배경]

- 인권의 범주내에서 권리들이 상충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사회에서 인권의 우선 순위가 일치하지 않음
- 2차대전후 신생독립국들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정체성 찾기
-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다양성의 고려
- 남북간의 불평등한 경제구조와 관계 및 빈곤의 문제
- 국가주권성, 내정불간섭 및 상대성 주장

[아시아 정부들의 주장 중 동의하는 부분]

- 아시아 정부들이 얘기하듯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인권이 보장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는 동의. 빈곤이 곧 인권침해이며 남북간의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는 인권보장의 주요한 장애로 자유, 대중적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와도 밀접히 관련.

[특수성에 대한 반론]

- 인권의 보편성의 수용이 문화적 다양성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Yashi Gai의 논문 중 특수성 논박하는 부분
(김한균씨 논문 번역한 것 참조)
- 민간단체들의 인권보장 요구를 무시할 때는 정치적, 사회적 특수성을 주장하지만 지역블럭을 형성하거나 초국적 자본 유입에 대해서는 제1세계와 다를 것 없는 태도.
-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동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제1세계에 대한 반론]

- 이중잣대 :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만 인권의 잣대를 들이댐. 예를 들어 중남미 군사독재 국가에 미국 정부의 지지.
- 인신구속적 인권 침해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고 그 외 제1세계가 유리한 가난, 전세계적인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논점화하지 않음.
- 인권을 보장할 만한 경제력(노동,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이 없는 국가들에게 경제적 지원 없이 인권을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인 선전밖에 되지 않는다.

[토론사례]

1. 인권을 무기로 한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 대이란 경제봉쇄
2. 중국의 천안문 사태
3. 북한의 핵개발 건
4. 중국과 티벳 /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 스리랑카와 타밀

[문제제기]

- **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제1세계 국가들에게

1. 인권침해란 국가권력이나 테러리스트에 의해 저질러진 것만을 가리키는가. 의회 및 자유선거를 보장하는 국가권력과 대의집중제(?) 사회주의 국가권력에게 인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무정치적 혹은 비정치적 인권문제란 존재하는가, 인도주의와 인권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3. 유엔은 어떤 정치적 관점에서 설립되었나, 어느 한 국가의 정치 사회 체제에 대한 언급 없이 인권을 얘기함으로써 갖게 되는 한계는 무엇인가

4. 중국과 북한의 내정불간섭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인권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개발독재 국가들에게

1. 정치적 시민적 권리보장은 일정수준의 경제성장이 되어야만 가능한가

2. 언론의 자유 제한, 노동착취, 국가주도개발로 인한 도시빈민 문제 등의 인권침해를 경제성장이 정당화할 수 있는가, 누구를 위한 경제개발인가

3. 사회주의 정권을 표방한 중국, 베트남, 북한 등은 왜 인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가

정치적 반대자들의 구속과 군대에 의한 처형 등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4. 내정불간섭에서 불간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SIAN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YASH GHAI / 김한균 옮김

서론 Introduction

현대의 인권논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서구사회로부터 비롯된 개인적 인권개념의 전통에 맞서는 아시아 고유의 인권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부 정부지도자들이 마치 전세계를 대변하는 양 인권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현실에서 아시아적 인권개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아시아의 문화와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이어서 더 현실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의 핵심은 서구사회에서 형성된 인권은 개인주의에 터잡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아시아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경제적 낙후성은 서구사회에서 강조되는 대부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때로는 그러한 권리가 민족주의와 국가지위에 위협스럽기까지 한 것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단일한 아시아적 인권개념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아시아대륙에 걸쳐 어떠한 문화적 현실적 동질성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만 해도 세계모든 주요종교가 혼재하고 있다. 계다가 사회주의, 민주주의, 봉건제도에 이르는 다양한 정치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있다. 종교적 차이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문화자체도 정적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의 문화에 대한 기존의 해석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다. 나아가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형편에도 차이가 난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반면,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은 빈곤에 처해있다.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체제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정으로부터 베트남의 캄보디아의 군사독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효율적인 일당독재, 중국, 베트남의 공산주의정권, 민주주의가 정착된 인도에 이르는 뚜렷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경제체제에서도 인도네시아 일부지역의 부족경제로부터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고도로 발전된 시장경제, 인도의 혼합경제모델, 중국, 베트남의 계획경제에 이르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인권개념은 이러한 조건들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인권개념은 또한 한 사회의 사회적 계급적 상황을 반영한다. 인권에 대한 단일한 아시아적 시각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것은 지배엘리트들의 특정시각이다. 이 지배엘리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지배와 통치의 편의성이다. 대부분의 이들이 이끄는 정치체계가 폐쇄적이며 반민주적인 까닭에 이들의 인권에 대한 시각도 독재와 억압을 정당화로부터 나온 것이다.

물론 아시아에서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검열받는 가운데 피언암자들과 주변인들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들도 있다. 아시아적 문화의 옹호자라 주장하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신들의 문화가 파괴된 원주민들의 열정적인 주장은 서구사회에서 조차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시장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산층들로부터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 법적 보호와 법의 지배의 미덕이 강조된다. 정치적 독점과 국가주권을 주장하는 정부에 도전하는 소수인종의 집단적 자율성에 대한 주장도 있다. 정부의 인권개념에 맞서 대부분

의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인권개념을 주장하는 비정부단체들의 정연한 목소리들도 있다.

아시아정부들간의 유대는 실제적이라기보다는 표면적인 것이다. 1993년 4월 방콕선언은 모든 아시아국가들로부터 승인되었는데, 인도와 같은 경우 선언에서 기대된 이상으로 인권에 기여한 정부도 있다. 여타 국가에서도 장애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인권조항과 독립된 사법부를 통해서 인권실현에 노력했다. 인도헌법은 수많은 계급차별과 성차별의 전통적 종교적 관행을 금지하였다.

아시아지역 정부간의 유대는 남북문제와도 연관지어보지 않을 수 없다. 방콕선언에서도 인권실현에서의 이중기준의 적용과 정치화를 금할 필요성이 역설되었다. 아시아지역 정부들은 냉전종식 이후 서구사회가 비민주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제삼세계 정치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은 시장의 형성 내지 강화를 위해 국가의 경제분야에의 개입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경제는 시장지향적이며, 대체로 성공적이다. 중국에서 조차 시장경제로 전환중이며, 경제적 성공이 널리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강조는 시장과 반드시 관련되지는 아니한다.

일부 아시아지역 정부들은 서구사회의 인권증진에 대한 압력을 서구제국의 세계적 주도권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서구적 가치의 보편화로써, 부분적으로는 아시아국가와 정치체계의 탈동양화로써 수행된다. 아시아지역정부들은 이에 맞서 대응해온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인권논쟁을 국제화하는데는 일정한 위험이 따른다. 이는 아시아지역 정부들의 인권규제관행으로부터 논점을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로 하여금 인권옹호자들을 서구의 꼭두각시로 매도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또한 서양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 간의 대립이라는 상투적인 구도에 이르게 된다. 이는 인권문제를 생산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정치화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아시아적 인권개념 The 'official' Asian view of human rights

많은 아시아지역의 영향력 있는 국가들,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의 인권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우선적으로 통제의 필요성과 서구사회의 압력과의 대결로부터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다분히 방어적으로 구성되어 왔던 것이다. 이는 또한 편으로 서구사회와의 논쟁 속에서 인권개념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일상적인 인권논의 속에서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공식적 입장은 요소들로서 인권에 관한 국내관할 domestic jurisdiction의 주장이 있다. 인권은 국가주권속에 압축되어 있고, 한 국가의 인권문제에 대처하는 다른 국가나 국제사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주장되어 왔던 자결권이라는 개념이 독립국가에게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인권은 국제적 문제이며 대규모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국내문제에 개입하여 구제해야 한다는 인권에 대한 현대의 시각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

1991년 "중국에서의 인권"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정부는 "국제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는 대체로 각국의 주권안에서의 문제이다"라고 주장하였다. 1993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 중국대표는 비엔나세계인권대회가 인권실현의 기반인 유엔헌장과 국제법규에 포함된 국가주권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을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된 국가들의 견해는 국가주권이 완전히 존중될 때만이 인권실현도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식적 입장의 또 하나의 요소는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권리의 상대성 relativity of rights이 있다는 것이다. 방콕 선언에서는 "인권이 본질에서 보편적이지만, 국제규범형성의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과정의 배경을 고려해야하고,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과 민

족적 지역적 특성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의 보고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인권과 관련된 상황의 전개는 다양한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의해 윤곽이 그려지며, 사적 발전과정과 관련된다. 역사적 배경, 사회체제, 문화적 전통과 경제발전정도에서의 커다란 차이로 인해 각국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행에는 차이가 나게 마련인 것이다"

중국은 이러한 이론들을 자국내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우선정책에 원용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정부공식보고서는 봉건제도와 모든 형태의 인간착취의 종식과 영양, 교육, 보건, 여성과 장애인의 지위에서의 지속적인 진보를 보고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인권의 완전한 보장에 실패하는 이유를 경제상황에 돌리고 있다.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따듯이 입히는 것이 중국인민의 기본적 요구이다")

인권개념에 대한 상대적 견해에는 두 가지 중요 논거가 있다. 첫째 정치적 안정이라는 제약, 둘째 경제성장의 우선이다. 전자의 경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제한을 합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싱가포르 정부의 1987년 성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무장관은 사회운동가와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구금에 대해 항의하는 미국하원의원에 대해 "탄력성과 결속 resilience and cohesive"과 인권에 대한 관용을 가능케 할 미국사회의 공유된 가치를 싱가포르의 취약성과 이질성 fragility and heterogeneity에 비교하였다. 즉 "우리는 분리주의 세력과 감정적 동요에 취약하다. 다른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처럼, 우리 싱가포르의 가장 주된 문제는 하나의 존속 가능한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짧은 역사 속에서 싱가포르는 되풀이해서 국내외의 모반세력에 맞서왔다. 이러한 국가에 대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사법절차로서는 전혀 충분치 못하다. 모반의 움직임은 매우 은밀한 것이어서, 형법상의 혐의 인정기준에 합당한 증거수집이 어렵다. 또 다수의 민족적 분규의 경우에는 재판절차 그 자체가 더 큰 소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싱가포르는 다른 방식으로 통치될 수 없다. 예방구금은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권력작용일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공개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정형화된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싱가포르의 또 하나의 측면으로서, 위의 장관의 답변에서도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즉 구금상태에서 강제로 자백을 받고 조작하여, 이를 국영방송에서 유죄인정의 증거로서 공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신뢰성과 존엄성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구금권한의 정당화뿐만 아니라, 집회와 결사, 평화적 시위,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데 동원되어 왔다. 중국의 정부보고서에도 인민의 생존권이 사회적 혼란이나 기타 재난에 의해 위협받을 때, 국가의 안정과 생산력의 향상이야말로 중국인민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이자, 중국정부의 장기적이고도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의 경제적 낙후성은 인권보다는 경제개발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논거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은 빈곤의 상황하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무의미하며 실현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정책의 최우선은 경제개발을 촉진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개발에는 그것이 추구될 수 있는 안정적 정치구조와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마련임을 의미한다. (예컨대 개발에 필요한 경우 주민을 강제이주시시키는 것과 같다) 인권과 경제개발의 대립은 논증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제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상이한 권리들사이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우선순위에 위치지우지 않는데도 원용된다.

이처럼 경제개발을 강조하는 정부들의 입장은 개발권 rights to development에 대한 지지를

결과한다. 개발권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에 입장차이가 뚜렷한 부분이다. 개발권은 다른 권리들과는 달리 개인이나 집단에 고유한 권리도, 국가에 대해 보장되는 권리도 아니다. 그럼에도 유엔총회는 1986년 12월 1일 대부분의 서방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권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to Development을 채택하였다.

개발권선언은 개발도상국가의 인권실현을 국제사회의 원조와 연결지웠고, 인민들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개발을 누릴 수 있고,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권리 부여했다. 뒤이어 권리의 불가분성을 강조하고, 개발과 개발의 과정에 대한 공정한 분배에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회합이 잇따랐다.

개발권선언은 다소 모호한 문건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전통적인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원용될 부분이 있는 반면, 또 인권실현의 제일차적 책임은 주권의 일부로서 국가에 부여되어 있다고 확인한 반면, 그 핵심은 국제경제정치체계에서의 인권실현에 대한 실패의 이유를 찾기 위한 데 있었다. 다시 말해서 부국들이 빈국에 경제적 원조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의 개발권선언에 대한 반응은 경제원조에 대한 정치적 조건의 부과였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관계와 협력의 경우가 그 예다.) 개발권선언은 또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대안적 틀을 제공하려고 시도하였다. 즉 논의의 초점을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국내영역에서 국제사회로, 그리고 언론, 집회, 사회복지와 같은 특정한 권리로부터 제삼세계국가의 관심사이며 국가가 정의하고 실현하는 개발권과 같은 포괄적인 권리에로 옮겼다. 개발권선언을 통해서 아시아국가들은 국내에서의 억압을 정당화하고, 외부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개발주의 developmentalism라는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인권논의틀의 변화에서 아시아정부들이 또 하나 주도하고 있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인데, 즉 이제까지의 접근방식이 서구사회의 논의를 주된 논의틀로 삼아왔다면, 일부 아시아정부들은 논의를 문화의 틀로 옮겨가려 한다. 문화의 틀속에서는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가 서구사회와 아시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문화의 틀이 인권의 본질과 특징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특히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에서 공세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정부보고서 "공동의 가치"에 따르면, 국민들의 문화적 가치는 외국의 이념과 가치로부터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아시아에서 우리는 싱가포르라는 국가를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가치와 이념위에 세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수사적 질문으로 나타내진다. 나아가 "우리의 지위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전통을 고수해야 하며, 싱가포르인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사회에 특유한 인식과 가치를 들고, 서구사회의 그것과 구분짓고 있다.

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개인과 사회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모든 인류에 공통된 가치라는 명제에 대해 아시아와 서구사이에는 개인과 공동체간의 관계에 주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아시아사회는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하는 반면, 서구사회는 개인의 권리에 강조점을 둔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사회는 늘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그것보다 우선시해왔다. "이러한 균형감각은 사회적 통합을 강화함으로써 싱가포르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합쳐 어려운 도전들을 다른 사회보다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였다. 공동체에 대한 강조야말로 싱가포르의 핵심적인 생존가치인 것이다."

아시아사회의 핵심적인 가치는 사회를 개인보다 우위에 놓고, 가족을 사회구성단위로 유지하고, 주장보다는 합의를 통해 주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아시아정부들은 부인

하지만, 이러한 것은 유교주의적인 요소인데,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현인honourable men”에 의한 정부라는 개념은 정부가 가능한 한 권력이 제한되어야 하며, 항상 의심되어야 한다는 서구사회의 관념보다 우리에게 더욱 적합한 것이다. 즉 현인은 인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인민의 권리를 위한 의무를 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에 앞선 국가”라는 개념에서 정치적 주권에 대해 강조되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의 또 다른 측면은, 권리의 반대측면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강조이다. 사회의 결속과 개인의 실현은 의무의 고리속에서 보장된다는 것이다. (의무의 우선성의 강조는 중국과 인도에서 특히 강조된다.) 싱가포르의 보고서에서는 개인이 권리의 주체로서만 상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에 대한 관심은 열악한 지위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의 구호의무라는 차원에서 논해진다.

문화적 차이만이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남아시아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야말로, 그 경제적 성공의 비결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필리핀의 비능률적인 경제와 민주화노력에 대한 싱가포르의 조소가 그 증거로 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이 지역의 경제적 성공을 이끌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의 견해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가족유대관계가 경제적 성공의 근원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시장, 개인주의, 법의 지배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는 정반대의)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많은 이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

공식적 시각에 대한 비판 A Critique of the official perspectives

아시아 정부들의 인권개념에서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란 논거는 적어도 두 가지점에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것은 서구사회의 개인주의와 정치사상전통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서구사회의 자유주의전통에서도 예컨대 투소와 같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입장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서구인권규범들도 공공의 이익과 국가이성에 비추어 인권기준에 제한을 두고 있다. 나아가 자유주의만이 서구정치사상의 모든 것은 아니다. 집단적·경제적 권리와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의 도덕적 상위질서로 평가하는 마르크스주의전통 또한 중요한 서구사상의 하나이다. 또한 서구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시민사회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둘째 아시아정부들은 국가와 공동체를 동일시하는 잘못된 전제위에 서있다. 이러한 혼동만큼이나 공동체에 위험스러운 것도 없다. 공동체와 국가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어느정도는 대립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 공동체가 대체로 합의에 의해 형성된 민중규범에 의존하고 있다면, 국가는 규제와 강제를 통해 사회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간의 긴장관계가 인권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아시아정부들은 사적 집단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들을 억누르고 있다. 또한 법률을 통해 시민사회전반에 걸친 통제를 하고, 개발과 질서유지의 명목으로 많은 공동체들을 파괴해왔다. 공동체의 활성화는 집회·결사·토론·저항의 권리실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정부들은 이를 자유주의적 권리라하여 배척해왔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공동체는 오히려 개인주의지향이라는 서구사회에서 더욱 활성화되어있다. 반면 아시아지역에서는 공동체의 우위라는 것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지아에서의 억압을 정당화하는데 동원되어 온 유교주의의 경우, 공자 스스로는 법과 강제력에의 의존에 반대하고, 국가권력의 제한을 주장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또 하나의 위협은 국가의 경제정책, 특히 시장경제정책에서 비롯된다. 아시아 자본주의가 가족과 대가족제도에 근거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가 공동체와 그 결속력을 약화시킨다는 데 또한 의문이 없다. 시장의 구성원리는 공동체의 그것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가치와 방법론도 다르다.

시장경제정책은 상당부분 다국적자본과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은 점차 세계경제와 문화에 통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맹공이 전통적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합의와 조화의 공동체에 대한 강조는 과도한 국가기구들과 모순된다는 점이다. 행정구금, 언론검열 등을 비롯한 과도한 통제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언론을 활성화하여, 합의를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반대자에 대한 불관용 또한 전통적인 공동체적 가치와 절차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필자는 아시아에서의 현상황은 적어도 모든 사회당사자들이 공정한 언론을 보장받는 서구사회에 비추어 훨씬 열악하다고 본다.

비공식적 입장들 Non-Official voices

비공식적 입장들도 상당수가 있다. 가장 억압받는 자들의 인권에 대한 분명한 견해는 알기 어렵다. 그들은 가장 심각한 인권피해자이며,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폭력에 의지하거나 기타 극적인 방법에 호소하기도 한다. 가장 중요하고도 분명한 집단은 지식인들인데, 이들은 국가로부터 거리를 두고, 정권을 옹호하지 아니한다. 지식인들은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며, NGO들처럼 세계지식인들과 연대하고 있다. 또한 NGO들처럼 인권과 민주주의에 이바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인권과 법치주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지식인 공동체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총체적으로 서구적인 관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특정국가의 조건과 인권문제를 관련짓고자 한다.

아시아지역 NGO들의 다양한 입장들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입장은 1993년 5월27일 아시아 지역 정부간 회의에서 표명되었는데, 여기서 인권이 보편적이며, 다양한 문화에 공통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화적 다원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보편적으로 수용된 인권을 부인하는 문화적 관행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인권은 보편적 관심사이자 보편적 가치이므로, 인권에 대한 옹호가 국가주권에 대한 침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NGO들은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의 원칙principles of the indivisibility and interdependence of human rights을 지지하였다.

물론 NGO들의 입장과 아시아정부들간의 공유된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NGO들은 열악한 인권상황의 원인을 세계경제질서에 돌리고 구조적 개혁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의 수용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는 달리 NGO들은 국내적 억압과 국제적 착취구조의 관련성에 더욱 주목한다. 즉 다국적 기업과 구호기관에 결탁한 지역자본과 정치엘리트가 그것이다. 또한 정부와는 달리 시장경제질서의 결과에 대해 비판적이다. NGO들은 인권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큰 틀이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그러한 틀은 사회정의, 평등한 자원 분배를 통한 빈곤의 추방, 남녀평등 등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NGO들은 인권상황의 평가에서도 정부와 보조를 같이 하기도 하지만, 대규모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국가권력의 불법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유감스럽게도 정권과 사회의 군사화는 인권침해의 제일차적 원인이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국가의 개선책은 철저한 민주화와 분명한 인권의 인식과 실현인 것이다.

결론 Conclusion

이제 더 이상 아시아정부들, NGO, 학자들 모두 국제사회의 인권논의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마저도 이러한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천안문사태와 자의적 구금, 사형, 강제노동에 대한 비판에 정면으로 맞서 방어적 입장에만 있지 않을 정도이다. 그대신 인권에 대한 다른 접근방식을 정립하려고 한다. 다른 국가들도 아시아적인 인권에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분명 인권의 정당한 자리매김이라는 것이 당대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윤곽지워진다는 점에서 올바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과 서구적인 보편적 인권개념은 오랜 유럽의 역사속에서 권력의 변동과 매 역사적 단계마다의 과제에 상응해 발전해온 것이다. 서구역사에 비추어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에 대한 주장은 유지되기 어려운데, 그 자신의 인민과 다른 민족에 대한 탄압, 노예제, 아동노동, 식민지 착취,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사회복지의 권리는 금세기에 와서야 승인되었을 뿐이며, 환경의 심각한 파괴 또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가져오고 있다. 즉 공동체는 의무뿐만 아니라 권리의 새로운 핵심주체로서 승인되는 것이다. 서구사회의 당면한 관심사와 유행이 인권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논의를 규율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인권이 사회적 경제적 배경속에서 위치지워져야 한다면, 아시아지역의 배경속에서 적절한 인권개념을 구성하는 특징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먼저 모든 아시아지역을 포함하는 일련의 특징을 찾는 일은 단념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지역의 현저한 다양성의 차이 때문이다. 소규모의 도시화된 경제적으로 부유한 싱가포르와 큰 영토와 가난함과 큰 농촌지역을 가진 인도사이에 어떠한 공통점도 없어 보인다. 필자는 이미 공통의 구별되는 문화라는 배경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문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에 근거한 정부들의 입장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다.

아시아적 인권개념의 논의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아시아에서의 인권의 기능과 인권논의는 서구사회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서구에서의 인권은 권력과 경제관계의 변동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발전해 왔다. 따라서 주권의 구조와 유형, 인민들의 기대와 열망에 부합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조직에 대해서도 심각한 패러다임의 도전이 없다. 인권의 기능은 행정 및 사법체계를 규제하고 이의없이 받아들여지는 권리와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아시아에서도 인권은 잠재적인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인권은 사회의 기득권과 권력에 대해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전통과 열악한 지위의 공동체, 군사화, 정치의 부패, 국내외자본의 약탈에 지속적으로 저항한다. 따라서 인권은 권력과 개선된 사회를 행한 투쟁의 영역이 된다. 이것이 아시아지역정부들이 서구사회와 인권논쟁을 벌이는 이유겠다. 즉 아시아지역정부들의 진짜 청중은 바로 자국국민인 것이다.

둘째 아시아지역에는 여성과 어린이, 하층계급과 열악한 지위의 공동체, 소수민족,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인권침해는 인권전반에 걸쳐 있는데,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한 침해, 그리고 대량학살과 실종, 고문, 강제이주, 자의적 구금과 사상과 표현에 대한 광범한 검열이 그것이다. 국가야말로 국민들을 침해하는 가장 주된 혐의자이지만, 대량의 인권침해는 시민사회속에서도 일어난다. 때때로 그것은 국가의 승인하에 종종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일어난다. 특히 민족적 계급적 사회갈등은 많은 국가에서 시민사회를 정치화 군사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우리에게 시민사회에 대한 과도한 낭만적 이해를 경고하고 있다. (예컨대 인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살인과 강간과 같은 억압의 가장 주된 원인은 차별적인 관습에 있다.)

셋째 이러한 침해에도 불구하고 인권의식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수세기에 걸친 억압과, 개인의 운명으로 돌리는 숙명론, 억압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들앞에 놓인 장애에 기인한다. 한 사회의 민족적 갈등으로부터 민족의식은 인권의식을 흐리게 한다.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분명 민족의식인데, 이는 국외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게 한다. 또 하나의 낮은 인권의식의 원인은 광범한 빈곤에 있다. 빈곤이야말로 인권부인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된다. 세계제제는 이러한 현실을 대개는 정치적 이유에서 외면하려 한다. 빈곤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존엄성없이는 어떠한 인권도 없으며, 억압체계에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발전이야말로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종류의 경제발전도 팬찮다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장은 반드시 평등주의egalitarianism의 광범한 보장, 노동자의 권리, 특히 이민노동자의 보호와 노동현장에서의 민주적 관행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성장은 고유한 공동체의 영역과 관습을 침해해서도 안된다. 경제성장과정에서 모든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발전이란 인권과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에 다름아닐 것이다.

넷째 아시아지역에서 인권침해 현실에 맞서는 일은 개인에 근거해서는 안되고, 집단 또는 계급에 근거해야 한다. 인권보장은 따라서 집단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 사실 아시아에서 국가야말로 가장 주된 인권침해자이다. 따라서 서구사회의 전통적인 법적-사법제도지향적 접근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아시아적 전략은 현실적으로 사법지향적이기 어렵기는 하지만, 사법부가 인권지향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투쟁이 국내적이어서만도 아니될 것이다. 정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각국에서의 인권실현은 세계의 세력들과 광범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현대의 세계적인 시장화가 그 예다.) 오늘날에도 제삼세계의 많은 정부들은 외부세계의 경제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며, 따라서 자신들의 운명을 규정하는 결정에 참여할 국민의 권리를 부인하는 국내정부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끌어들이는 일이 필요한 것처럼, 이해관계를 가진 본국에 대해 투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아시아적 인권개념을 위해서는 문화주의적 혼란을 극복하고, 인권을 정치 경제의 핵심에 위치지우고, 국내적으로 동시에 국제적으로 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 다음은 93년 3월 말, 방콕에서 열렸는 아태지역 정부와 민간단체(NGO)의 지역회의와 같은해 6월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의 정부 및 민간단체 문서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원문(한/영) 전체와 배경에 대해서는 <유엔세계인권대회사료집>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KONUCH)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국가 NGO대표의 방콕선언 (1993, 3.27 채택)

1. 보편성

우리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인권에 대한 존중을 심화하는 데 이를 문화의 인권관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아태지역 문화의 풍부함과 서로로움을 포용하는 보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편적 인권기준은 많은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성, 어린이, 소수자와 원주민, 노동자, 장애자와 폐난민, 불구사, 노인 등과 같은 특수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인권에의 보편적 기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옹호하기만, 여성의 권리를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무시하는 문화적 패해는 용납할 수 없다.

인권은 보편적 관습사이고, 그 가치가 보편성을 갖는 것이므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국가주권의 침해로 간주될 수 없다. (문제제기 단락에서)

아시아 국가 정부 대표의 방콕 선언 (1993, 4.2 채택)

국가주권 존중, 영토 보전 그리고 국내문제에 대한 비간섭의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모든 인권의 보편성, 개관성 및 비선택성을 강조하고 인권실시와 정치적 쟁점화의 경우 이중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개별권에 대한 선언이 개별권을 보편적이고 양도불가능한 권리로서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인정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상 전문에서)

7. 모든 인권의 보편성, 객관성 및 비선택성을 물론 인권의 실행에서 이중기준적용을 배제할 필요성 그리고 어떤 인권 침해도 성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8. 인권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이며 동시에 민족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및 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규범체계의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진보에 따라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인정하다; (이상 본문에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1993, 6, 25 채택) - 정부대표

세계인권대회는 각국이 국제연합헌장, 기타 인권관제법규와 국제법에 따라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가 보호를 전진시키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엄숙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 본질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제2부 1절)

모든 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갖는다. 국제사회는 인권을 전세계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방식으로, 대등하게, 또 동일한 비중을 두고 다루어야 한다. 물론 민족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에 유념해야 하겠지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체계를 떠나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제2부 3절)

6절 1. 세계인권대회는 개발권 선언에서 확립된 개발권이 보편적이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자 기본적 인권의 불가결한 부분임을 재확인한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민간단체(NGO) 최종문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민간단체가 채택, 발표한 Vienna NGO Forum Final Documents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다. 여러주제로 나누어진 실무분과(working group)의 권고안만이 언급되어 있다.

Asa\hr01.hwp 1996년 6월 3일 / 참여연대 국제연대포럼 96-3차

'아시아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제에 대한 메모

이성훈

1. '아시아 인권논쟁'의 배경

아시아 인권론이란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일부국가가 자국의 인권현실에 대한 서방국가의 간섭과 비판에 반박하고 자국의 인권현실과 정치경제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개발한 논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인권은 본질적으로 보편적이며 동시에 민족적, 지역적 특수성과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및 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규범체계의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진보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아시아 정부 방콕선언 1993)에서 보듯이 아시아 정부는 특수성을 주장하지만 보편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편성을 강조하는 아시아 민간인권단체(HR NGO)는 '문화적 다원주의를옹호하지만...인권은 보편적 관심사이고, 그 가치가 보편성을 갖는 것이므로, 인권을옹호하는 것은 결코 국가주권의 침해로 간주될 수 없다.' (아시아 NGO 방콕 선언, 1993)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은 국제 인권법의 성립과 발전과정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주제이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예상된다.

더러한 인권논쟁이 '왜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가 아닌 아시아에서, 그리고 왜 60-70년대가 아닌 최근에 나타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이지역 특유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정치적 자신감과 문화적 중심의 표현(관료적 권위주의 → 탄력적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 → 아시아적 민주주의(백영 글 참조)), 둘째, 서방국가의 패권주의적 간섭에 대한 대항논리, 셋째, 자국내의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 넷째, 한국모델(Look East Asia)의 '가치하락'과에 따른 자체적 모델개발의 필요성, 다섯째, 제개발 정책에 의해 파생된 각종 사회문제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려는 정치적 술수(민족주의 선동), 여섯째,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도입한 '시장자본주의'에 의한 정치적 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논리 개발(중국, 유교의 부활) 등을 들 수 있다.

상에서 보듯이 이른바 '보편성-특수성' 논쟁은 '개별-특수-보편' 또는 '과연 인권의 보편적 개념이 가능한가?'라는 철학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이 논쟁은 정치적, 이념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며 한걸음 더 나아서는 문화, 문명적 차원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이 논쟁은 중국과 미국의 논쟁에서 보이듯이 동서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성을 지니는 한편 제3세계(남)와 제1세계(북)의 대립구도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이 논쟁은 국제인권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국제인권인권운동의 기반이 바로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인권의 보편성은 국제인권법의 전제이자 기반이기도 한다. 국제인권법은 '자연권으로서의 평등한 국가주권'에 대한 도전을 통해 개인을 국제법의 대상이 아니라 그의 위치에까지 상승시켰으며, 유엔의 성립과 함께 제정된 수많은 국제인권규약과 기구들은 특정국가의 침해를 시정, 예방하기 위하여 주권의 제한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한 논리와 규범 계속 확대, 발전시켜왔다.

인권의 보편성 논쟁은 여러 가지 다른 이론적, 실천적 인권관련 논쟁으로 이어지며 (이대훈 글 참조) 상당부분은 인권에 대한 개념인식의 차이에도 비롯된다. 즉 전자는 시민정치적 권리(문화적 권리)를 강조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전자가 언론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 자유를 강조하면 후자는 생존권과 평등의 권리를 강조한다. 또한 후자는 전자는 개인의 자유권을 강조하는 제1세대 개념(자유), 후자는 집단의 사회권과 국가를 강조하는 제2세대 인권개념(평등)으로 구분하면서 이를 넘는 국제적 차원의 발전권, 환경권, 평화 등 현대성에 기반을 둔 제3세대 인권개념(평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장희 참조) 한편 실천적 차원의 예로는 국내에서는 1994년 국제사면위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발표 이후, 일부 보수언론이 인권의 보편성 개념을 거론하면서 '왜 남한의 인권단체가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나?'라고 국내 인권단체를 비판한 적이 있다. 아직 인권의 보편성 논쟁은 이론적으로 큰 진전이아 합의 도달하지 못한 듯하다. 양자간에는, 인권의 보편성을 언급한 각종 국제인권문서에서 보여지듯이 결충적, 즉 어느쪽을 더 강조하느냐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문제의 초점은 '국제적으로 인정된(internationally recognized) 국제인권기준(법, 규범)'의 내용이 무엇이며 누가 만드는가? '국제적으로 인정된(internationally recognized) 국제인권기준(법, 규범)'을 누가 판단내리는가? '국제적으로 인정된(internationally recognized) 국제인권기준(법, 규범)'을 누가 만드는가? '국제적으로 인정된(internationally recognized) 국제인권기준(법, 규범)'을 누가 판단내리는가? '국제적으로 인정된(internationally recognized) 국제인권기준(법, 규범)'을 누가 만드는가? '국제적으로 인정된(internationally recognized) 국제인권기준(법, 규범)'을 누가 판단내리는가?

(internationally recognized) 국제인권기준(법, 규범)의 준수여부를 어떻게 감시하고 '강제'할 수 있는가? 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논쟁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위 대립개념과 구도가 아래와 같이 파생되어 왔다. 예를 들면, 인도주의 간섭(humanitarian intervention)과 내정간섭/국내적 관할(domestic jurisdiction), 국제 법과 국내법, 국제인권법과 정치군사적 힘,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침해할 수 없는 권리(non-derogable)와 국가안보, 권리와 의무, 자유와 평등, 국제인권법에서의 개인과 국가, 경제 성장과 인권보장/민주주의, '양심수/정치범'과 '반혁명죄',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대 '국권없이 인권없다' 등이다.

- 위의 대립개념과 구도로 설명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 ① 중국과 미국: 최혜국대우(MFN) 연장과 산아제한, 유엔인권위 결의안, 티벳독립,
 - ② Michael Fay 폐인트 칠과 곤장사건, 언론통제(FEER) : 싱가포르와 미국, 서방언론사
 - ③ 베마(미얀마) 인권문제 : 아세안(ASEAN)과 미국, YS
 - ④ 아동노동, 강제노동(남부아시아) : 파키스탄, 인도와 서방국가
 - ⑤ 둉티모르 : 유엔과 인도네시아
 - ⑥ 말레이지아와 미국 : APEC의 범위와 주도권, EAEG?
 - ⑦ 남한과 북한: 북한인권논쟁 등이 있다.
 - ⑧ '정신대' 문제: 일본과 NGO (국가배상, 유엔인권결의안, 개인제소)
 - ⑨ 지역인권기구(Regional Arrangement) :

2. 왜 '아시아 인권논쟁'이 중요한가? - 현대적 함의

- ① 아시아의 인권현실과 인권운동의 현실 및 역할에 대한 이해
- ② 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과 인권침해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이해
- ③ 지구적/아시아 차원의 '개발-민주주의-인권' 문제와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
- ④ 한국의 압축형 경제성장/근대화 모델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
- ⑤ 한국 민간인권운동의 아시아인권연대 전략 모색
- ⑥ 한국정부의 인권외교의 한계와 '딜레마' 극복?
- ⑦ 북한인권문제를 이해하는데 시사점

3. '아시아 인권논쟁'을 둘러싼 각각의 입장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시아 인권논쟁'에는 여러 가지 입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략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아시아 정부와 아시아 민간인권운동(NGO) 그리고 서방국가의 입장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주체가 내부적으로 통일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세가지 주체는 편의상 구분한 것이다. <표 1>은 각각의 주장을 쟁점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1) 아시아 정부의 입장

인권의 보편성 논쟁은 앞에서 말했듯이 모든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중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가 논쟁을 주도해가고 있다. 이 나라들은 이념과 정치경제체제 그리고 문화와 종교적 전통이 각각 다르지만 (표 2 참조) 앞에서 말한 여섯가지 공통요인에 따라 공동의 이해관계가 지나고 있다. 이른바 헌팅턴이 말한 '유교와 이슬람 문명'의 부분적 결합형태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가장 뒤늦게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존권'과 '집단(체)의 권리'를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인권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성을 보인다. 싱가포르는 한국보다도 물질적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성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국가처럼 특수성을 강조한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 특수성이 논쟁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이외에도, 이념적, 정치적, 문화적, 문명적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

		이념/정치체제	
		자본주의 권위주의	(시장)사회주의 권위주의
문화 종교	유교	싱가포르	중국, 북한
	이슬람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리비아 이란?

2) 서방정부의 입장

서방정부는 거의 한목소리로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한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앞장서고 있다. 이를 국가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한국정부도 문민정부 등장 이후 이 입장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서방국가들은 인권문제가 인권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아시아 국가와의 정치, 무역 문제와 결부될 때 국익의 입장에서 정책을 취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면, 둉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 군대의 침공을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기를 판매한 미국, 영국 등) 한편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권정책에서 보듯이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곤 한다. 따라서 외교적 언어(rhetoric)으로서의 보편성 주장이 그대로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3) 아시아 민간인권운동단체(NGO)의 입장

민간단체는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인권의 보편성의 토대위에 다원주의를 받아들인다. 인권의 특수성 강조가 인권침해의 정당화를 의미하므로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한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극심한 가난과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이유로 서방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비판한다. 그리고 서방국가의 인권을 정치적 무기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인권의 정치화'와 '입관성 결여' 및 '이중기준'적 태도를 비판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 특히 아시아구가의 국제인권법의 가입, 비준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국제인권기준을 잣대로 이를 국가의 인권현실을 비판하기도 한다. 아시아 정부의 논리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방식이외에도 이를 국가의 주장과 현실과의 괴리와 모순을 지적, 비판하기도 한다. (중국의 경우)

한편 개인의 자유권을 주장하는 일부 서방이나 국제인권단체와 사회적 권리(인권)를 강조하는 일부 아시아 인권단체와의 견해차이가 노정되기도 한다. 서구의 경우는 자유주의적 철학과 정치세력의 형향으로 자유권을 강조하는 인권운동이 발전한 반면, 아시아에는 권위주의적 군부독재에 의한 기본권의 혹독한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자유권 중심의 인권운동이 발전하여 표면상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구조적 원인은 매우 다른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서방의 지원이 주로 자유권을 위해 일하는 제3세계의 NGO에 집중하여 제3세계적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한 서구모방의 자유권중심 NGO와 사회권 문제에 집중하는 NGO사이의 갈등도 나타나곤 한다.

4. '아시아 인권논쟁'과 한국

1) 한국정부의 입장

한국정부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표한 '인권외교' 정책에 따라 93년 방콕과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보편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여기 우리들이 세계인권대회에 모인 자리에서 나는 한국에서 인권이 드디어 성숙에 이르렀다고 알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진실,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가 마침내 승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이며, 상호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권의 보장을 위해 다른 인권이 부인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 (당시 한승주 외무부 장관 연설에서)

그러나 '문민정부'에서도 여전히 단 외국 인권문제에 대해서만 보편성 입장을 취한다. 즉 국제사면위 등 국제인권단체나 미국정부가 한국의 인권, 특히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면 '특수성'을 들어서 방어하고 외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은 제외하고) 보편성 입장을 취한다. 즉 입장과 구체적 정책 및 실천은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나타난다. 여전히 인권외교를 구실로 하지만 '국익' national interest - 사실 매우 모호한 개념이지만 - 이 인권문제에서 최우선의 가치를 지닌다.

지난주 아웅산 수지와 바바 민주화운동에 대한 버마군사정권의 탄압에 대한 청와대 유감성명을 통해 YS는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외교'의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마 그러한 '돌출'행동이 버마의 군사정권과 결탁하여 여러가지 부문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버마 진출 한국기업의 활동에 장애가 되어 '국가경쟁력' 약화와 최근의 무역적자 줄이는데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서 한 듯) 따라서 이러한 행동이 '보편적으로' 확대될 수 있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 예를 들어 중국과 동티모르의 경우에도 같은 것이 가능할까? 버마의 경우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의 특별한 위치와 자신의 과거 가택연금 시절에 대한 회상, 모든 '선진국'이 비난하는 국제적 분위기 편승, 그리고 DJ에 대한 '경쟁의식'이 발동한 것은 아닌지...

미국정부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인권외교정책이 다르듯이 한국정부도 내부를 들여다 보면 다양한 입장이 공존한다. 정권교체의 경험이 없어 정당간의 차이는 아직 드러난 바가 없고, 행정부내에서 외무부의 입장이 안기부, 내무부, 법무부의 입장과 대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인권문제, 노동법, '양심수'

결론적으로 문민정부의 '인권외교'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다. 역설적으로 진정한 '인권외교'는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산적한 국내인권문제(국가보안법, 노동법 등)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개선하고 보다 철저하고 국제수준에 따른 국내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없는 인권외교는 허구에 불과하다.

2) 한국 민간인권운동의 입장과 과제

대다수의 아시아 인권단체와 보조를 맞추어서 원칙적으로 보편성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아시아의 인권문제에 책임있고 깊이있게 참여한 경험이 없어 보편성에 대한 진지한 이론적, 전략적 논의가 이루어 진적이 별로 없는 편이다. 앞으로 점차 점증하리라 예상.

국내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의 맥락에서 인권의 보편성-특수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부 보수언론은 인권의 보편성을 거론하면서 '왜 남한의 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단체에 대해 침묵하느냐?'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남한 인권단체의 공식적 입장이나 반박이 표명된 적은 없다. 거대 보수언론을 상대로 하는 논쟁은 소모적이고 오히려 역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 그러나 대체적으로 진보운동은 남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서방국가와 국제인권단체의 개입을 촉구하면서 이를 반박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보편성 입장에서 비판하는 '근본주의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북한, - 어느 정도는 중국의 경우도 - 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특수한 역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입장이 더 지배적인 듯하다. (사실 이 두 입장은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정보가 없어서...' '무입장, No comment'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정치권의 '바람론', '햇볕론'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사실 북한을 별도의 국가와 체제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보는 시각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하버마스가 '통일의 정치적 목표가 반드시 시민권의 확대와 자유실현의 이상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서울대 강연) 지적했듯이 북한인권문제는 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국제인권기준을 하나의 공동의 기준으로 인정하여 통일의 과정에서의 목표를 양측의 인권을 이 국제인권기준으로 중진하는 것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통일의 과정이 '아시아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을 가장 효과적이고 창조적으로 종식하는 길이 아닐까?

〈몇 가지 고민과 질문〉

- 1) 한국의 인권운동단체는 진짜로 보편성을 받아들이는가? 논리적으로는 보편성이 그럴듯하지만 현실에서 특수성이 더 설득력 있는 것 아닌가?
- 2) 보편성 지지는 결과적으로 서방국가의 입장을 지지하여 가난한 제3세계 민중을 결과적으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트리게 하는 것 아닌가? 미국의 이라크 경제제재조치로 누가 고통을 당하였는가? 쿠바의 경우도?
- 3)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근본주의적(보편성)' 입장과 '현실주의적(특수성)' 입장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고자료〉

- 이대훈, 1995, "인권운동과 보편적 인권규범: 그 7대 딜레마(1)", <민주법학 9호> 1995년 상반기, 민주법연
이장희, 1989 "제3세대 인권의 개념", <인권과 국제법>, 박영사
백영서, "중국인권을 보는 시각", 창작과 비평
하버마스, 1996, <민족통일과 국민주권>, 제8회 서남 초청강좌
유엔세계인권대회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KONUCH), 1994 <유엔세계인권대회자료집>

표 1: 주요생점에 대한 아시아정부, NGO, 서방정부의 입장

생점	주요주장
보편성 아시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구적 개인주의: 인권개념은 서구적인 것이며 특히 시구의 부르주아적 개인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아시아의 공동체 문화에 어울리지 않는다. ② 의무의 강조: 개인의 국가에 대한 권리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③ 단계적 실현: 인권의 실현은 당장 될 수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실현될수 밖에 없다. ④ 문화적 차이: 인권에 대한 이해와 실현방식은 각 나라가 처한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현실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일방적인 인권개념과 기준은 불가능하다.
특수성 아시아 N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인권은 보편적 관심사이자 보편적 가치이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국제적 보호는 국가주권 침해가 아니다. ② 모든 국가는 즉각 모든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고 준수해야 한다. 국민인권기구와 지역인권기구 설치하여 지역인권보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③ 불가분성: 특정 인권의 신장을 이유로 다른 인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④ 인도주의적 개입: 대규모 인권문제에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내정간섭 아니다. ⑤ 개인도 국제인권법의 주체이다.
서방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편성: 인권은 보편적이므로 모든 나라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주권 아시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권우선: '국권없이 인권없다. 주권은 국제인권법/규약보다 우위에 서며, 인권은 자국의 헌법 등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이다. ② 국가안보: 체제수호와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반체제, 폭력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양심수'나 '정치범'은 없고 오직 '반혁명죄를 저지를 형사법'만 있다. ③ 국내관할(domestic jurisdiction): 인권보호는 국가의 우선적 의무이므로 이는 국가주권(national sovereignty)의 문제이다. 따라서 외국의 관여는 내정간섭이다. ④ 블록정치: 서방의 간섭없이 지역내에서 대화와 평화적 수단으로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바 '건설적 개입 constructive engagement' 아세안국가의 비마인권문제에 대한 입장 ⑤ 폐권주의적 내정간섭 도구: 인권은 서방의 강대국이 제3세계의 약소국을 억압하고, 간섭함으로써 자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도구에 불과하다. (MFN) ⑥ 이중입장: 서방국가는 인권에 대해 이중적 입장(double standard)를 지닌다. 자국과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제3세계의 인권문제를 선별적으로 거론한다.
국가안보 아시아 N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안보는 사실 정부나 정권(government, regime)의 안보를 위한 이데올로기이다. ② 국민국가에 입각한 국가주권의 절대성이 무너지고 상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 민중안보(People's security) 또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가 필요하다. ③ 모든 인권의 완벽한 보장이 보다 효율적이고 질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인권보장과 민주화 없이 추진된 경제성장의 후유증과 문제는 너무 크며 비용의 측면에서 전혀 경제적이지 않다. ④ 인권침해 - 특히 시민정치적 권리 - 의 1차적 원인은 국가권력에 있다. ⑤ 고문근절, 언론의 자유 실현에는 전혀 예산이 필요치 않다. 즉각 무조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서방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주권이나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② 서방국가의 정치, 경제적 이익이 침해받지 않은 범위안에서 국가안보는 허용될 수 있다!
발전권 아시아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존권: 먹고사는 문제, 즉 의식주의 해결이 인권의 본질이며 전부이다. 따라서 인권문제 없다! 먹고 입고 잠잘잠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② 발전의 권리: 아시아에서 인권실현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가난이다. 가난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의 지속적,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각국의 발전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가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발전의 권리가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와 선진국의 이기적인 기득권보호 전략에 의해 저해되고 있다. ③ 경제성장: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 권위주의가 필요하며 인권의 신장은 사회정치적 불안을 초래하여 성장에 장애가 된다. (필리핀, 인도, 구소련을 예로 들면서) 따라서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부분적,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④ 산아제한은 사회발전과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중국)
경제성장 아시아 N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극심한 가난이 인권침해의 원인이이다. 따라서 개도국의 개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발전의 과정에 민중, NGO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 필요. 지속(勝) 가능한 인간개발(Sustainable Human Dev't) ② 사회주의사회(중국)의 현실에서는 생존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과거는 노동권 보장으로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이제는 노동권은 물론이고 생존권마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③ 경제성장이 나중에 인권보장과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증거가 없다!
서방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르주아 없이 민주주의 없다'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중산층이 형성되면 민주화와 인권의 실현된다. 따라서 경제의 개방과 확대, '조용한 외교'나 민간차원의 활발한 교류가 민주주의를 촉진한다. (공화당) ② 중국의 산아제한, 천안문 학살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자행되는 나라에는 무역제제 등 강제적인 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해국대우(MFN)은 중지되어야 한다. (민주당?) ③ 아동노동: 아동노동은 아동학대이다.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 수입을 금지한다.

별첨자료 : 선언문

인권에 관한 아·태지역 비정부조직 선언

방콕, 1993. 3. 27.

개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인권과 민주적 개발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110개의 비정부조직에서 파견된 약 240명의 참가자는 여성, 어린이, 원주민, 노동자, 지역 개발 등의 문제를 대변하면서 1993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방콕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아·태 지역에서 현재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임은, 인권에 관한 아시아지역의 정부간 모임(1993.3.29~4.2, 방콕)과 세계인권대회(1993.6. 비엔나) 및 그 이후의 활동을 앞두고, 국제연대의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견해와 제안을 제출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촉발되었다.

문제제기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 고려사항을 뽑아내었다.

1. 보편성

우리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인권에 대한 존중을 심화하는 데 이들 문화의 인간관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아·태 지역 문화의 풍부함과 지혜로움을 포용하는 보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편적 인권기준은 많은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여성, 어린이, 소수자와 원주민, 노동자, 망명자와 피난민, 불구자, 노인 등과 같은 특수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인권에는 보편적 기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문화적 다원주의를 옹호하지만, 여성의 권리와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무시하는 문화적 관행은 용납할 수 없다.

인권은 보편적 관심사이고 그 가치가 보편성을 갖는 것이므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결코 국가주권의 침해로 간주될 수 없다.

2. 불가분성

우리는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의 원칙을 수호하려고 한다. 이는 인권의 내용이 시민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문화적이든지 상관없는 것이다. 인권의 보호는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관계를 맺는다. 인권의 향유는 공동체에 대한 다소간의 사회적 책임을 포함하는 것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날마다 일어난다. 이러한 침해에는 자결권의 박탈, 군사적 점령, 살해, 고문, 정치적 억압, 표현의 자유와 다른 자유의 억압이 포함된다. 한편 빈곤과 최소한의 필수품 결핍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침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민적·정치적·경제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종종 인권을 회생시키면서까지 경제개발을 강조하는 데서 발생한다. 사회문화적 권리침해는 인권을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는 정치체계의 산물로 자주 일어난다.

경제적 권리는 자원과 수입의 공정한 분배 그리고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해방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예컨대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조직하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to 행사할 수 있는 곳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빈곤은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잘 이루지 못한 데서 일어난다.

인권에 관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접근이 요청된다. 한 종류의 인권이 다른 종류의 인권을 위해 거래될 수는 없다.

3. 인권으로서 여성의 권리

여성의 권리에 관한 쟁점은 인권논의 중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인권제도와 관행에서, 계급, 카스트, 민족성을 통하여 관철되는 가부장제도는 여성에 관한 문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가부장제도는 일종의 노예제이고 이것은 폐지되어야 한다. 여성의 권리는 사회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특히 가족 안에서 선언되어야 한다.

여성에게 존엄과 자결권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불가분적이고 평등한 경제적 권리—예컨대, 농토, 집과 다른 자원, 재산에 대한 권리—to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유엔이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강간, 성적 학대, 여성매매, 가정내폭력을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범죄는 만연되어 있다. 여성에 대한 범죄는 인간성에 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데 실패한 정부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아·태지역에서 여성의 권리라는 종교적이고 민족적 주체성을 군사적으로 점점 더 주장하는 것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 그리고 몇몇 국가는 이러한 침해가 종종 개인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평계로 이용하였다. 위기상황, 예컨대 인종폭력, 지역폭동, 무장충돌, 군사점령, 추방 등의 경우에 여성의 권리는 특히 침해된다.

국가들이 여성의 권리를 위한 적절한 국제적 제도를 만드는 데 동의한 경우, 많은 나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의 유보조건을 둔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연대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결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국제적 연대를 이루기로 결의하였으며 국적에 관계없이 우리들의 형제자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인종이나 성,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민족적 기원에 따른 차별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국제적 연대는, 국가주권을 주장하거나 국가의 국내문제 불간섭을 주장하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 일국적 질서를 넘어선다.

5. 지속가능한 개발

어떠한 나라도 진정한 자유가 없다면, 즉 외국의 지배나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면 진정한 개발을 이룰 수 없다. 잘못된 개발(maldevelopment)이나 인권에 대한 대규모 침해의 주요한 원인은 아태지역에서 제구주의가 지배한 결과이다. 진정한 개발의 전제조건은 이 지역에서 국가적 해방과 민족의 자결을 획득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균형잡힌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것은 인간개발의 극대화,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체계적 접근, 평등과 사회정의, 수입의 분배와 공정한 자원배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여성, 어린이, 시골사람들, 도시의 빈민들, 소수자, 토착민, 망명자, 피난민, 노동자 그리고 그의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서로 다른 집단들의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다양한 종류의 개발모델은 잘못된 개발을 초래하였다. 민족해방을 저지하려는 활동과 정치적 군사적 역할에 향거하는 민중의 자결권이 개발의 구현과 관련한 주요한 양극점이다. 이러한 것은 지역적 특이성과 결합하여 있지만 사실상 국

경을 사이에 둔 사람들간의 공통성을 고려해 볼 때 국경은 때로는 자의적인 것이다.

한편 우리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서 국민의 요구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개발모형을 제안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구는 남녀 모두의 요구이며, 부채삭감, 국제적인 재정적·경제적·상업적 체제 개혁, 의사결정과정의 더 많은 민주화를 포함한다. 다면적이든 양면적이든 국제원조기구와 재정기구의 역할은 많은 인권침해를 유발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정책과 행동에 의해 유발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국제적인 경제강국이 인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세계적 평등과 부존자원의 면에서 남과 북이 갈라진 것이 엘리트주의와 결합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놓고 있다.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것이 개발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일으킨다. 시장의 권리(market rights)는 인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착취할 자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적 권리를 주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개혁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요망된다. 잘못된 개발은 가난과 수입불균형, 약탈, 수탈의 증가로 귀결된다. 그리고 땅과 자원의 점령, 환경파괴가 그 귀결이고, 남녀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인간개발, 자유, 존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거시경제적 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모두 그 귀결이다.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확립하고, 여성의 권리부여 및 성적 평등을 증진하려는 절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개발과정을 민주화할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개발과 인간적 개발을 증진하는 것이다.

6.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단지 법률적이거나 형식적인 과정 이상의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일정당이나 복수정당 선거에서 의례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 이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수준의 사람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이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에 영향을 미칠 모든

토론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방적,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성과 신뢰성 있는 절차와 제도 아래 모든 수준에서 국민이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것은 홀란통치, 타락의 추방, 국민에 대한 국가와 다른 당국의 책임성을 요구한다. 그것은 다수에 속하지 않는, 즉 소수자와 권한이 박탈당한 집단의 참여와 보호를 포함한다. 그것은 시골사람들과 그의 열악한 처지에 있는 집단을 위한 토지 및 사회정의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가정에서 작업장에서 마을에서 그리고 그 이상의 영역에서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퍼져있다. 그것은 모든 국가에서 조장되어야 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7. 군사화

우리는 이 지역에서 점증하는 군사화와 이 목적을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군사화는 시민사회와의 파괴로 귀결되며, 자결권을 잠식하며, 사람의 자립할 권리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다. 때로 군사화는 자경단과 같이 민간인 집단의 외관을 갖기도 한다.

그것은 특히 원주민에게 해를 끼쳤으며 이주를 강요하였다. 그것은 성적 학대, 강간 그리고 무력 충돌 과정에서 자행된 범죄 등, 여성에 대한 폭력과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그것은 어린이에게도 특히 상처를 주었다. 이들은 체포와 고문, 철수령, 집단 살해, 실종, 기타 인권침해와 같은 쓰라린 사건들 때문에 신체적 건강, 정서적 불안정, 사회적 부적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군사화는 종교적 근본주의와 특정한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인종발살을 포함한 인종적 불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작고 다소 덜 군사적인 국가의 군사화는 초강대국이나 종교적 강대국에 의해 조장된다. 대량살해무기의 판매를 통하여 이득을 누리는 것이 선진국의 경제성장과 개발도상국의 잘못된 성장의 주요한 원인이다.

평화와 인권에 대한 요구는 탈군사화의 요청과 결합해 있다.

8. 자결권

민족의 자결권은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법에 잘 정립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내적 갈등의 깊은 기원은 이러한 근본적인 인권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이 자결권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한 권리 덕분에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신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한다. 따라서 자결권에 대한 민족의 권리는 모든 정부에 의해 수호되어야 한다.

또한 자주적 결정이 반드시 국가상속이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주적 결정은 독립, 자유로운 연합, 독립한 국가와의 결합 그리고 대중적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도달된 그의 합헌적 조정 등을 의미할 수 있다.

9. 고문

아태지역에서 고문과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의 존재는 점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

상당수의 나라에서 피의자는 “자백”을 얻으려는 법집행요원에 의해 고문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관행은 범죄를 통제하는 데 값싸고 편리한 방법으로 취급되어, 몇몇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위 “자백”이 법정에서 “증거”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 예방의 차원에서 그리고 치유의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 치유하고 함께 고문희생자의 재활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책임자의 처벌도 담고 있다.

10. 표현의 자유

이 자유는 많은 아시아 지역국가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이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및 민주주의와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독립한 언론매체가 없다. 사람들은 공포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수감되며, 살해된다. 표현의 통로를 제한하는 평계거리는 종종 국가안전, 법과 질서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권위주의의 외피이며 민주주의적 열망을 억압하기 위한 외피이다.

11. 인권교육과 훈련

지금까지 인권교육과 훈련은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내용에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다. 문맹도 여전히 광범위하다.

학교의 교과목은 지배엘리트에 특혜를 주는 경향이 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격려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교육과 훈련은 예방적 및 치유적 영향을 미친다. 즉, 이것은 사람들에게 배상의 가능성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을 막도록 하는 힘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중진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학교와 학교밖에서 정부 및 비정부계획 하에 종합적인 인권교육 및 훈련을 발전시켜야 한다.

12. 원주민

아태지역은 많은 원주민의 본거지이다. 이러한 원주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은 많은 것이 정부에 의해 토착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원주민들은 적절한 국제인권기구 아래에서 보호받아야 될 그들 특유의 문화적 주체성과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한 정부—남이나 북으로부터 혹은 동시에 혹은 국제적 금융기구와 다국적 조직—에 의해 자행된 민족살해, 인종살해의 희생자이다. 현재 이용될 수 있는 국제적 법률제도는 집단적

인 인권보호를 보장하기에는 취약하다.

이 지역의 많은 곳에서 토지에 대한 권리와 여타 권리들이 존중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중에는 토지의 몰수 및 약탈, 무장충돌, 피난민으로 추방 등이 있다. 이러한 것은 무력에 의한 박해 및 억압과 함께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 때로는 관광업이 상업적인 착취를 통하여 원주민의 생활양식을 파괴하기도 한다.

13. 어린이

어린이의 학대와 착취가 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것에는 어린이 노동, 노예 및 성적 학대, 어린이 매춘, 어린이의 판매 및 거래행위, 무력충돌 상황의 어린이, 수감된 어린이,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어린이 또는 모든 것을 박탈당한 어린이, 가족분열이나 해체와 더불어 가내에서 학대받는 어린이 등의 문제가 포함된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 영양공급, 교육, 보호장소, 참여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사항조차 종종 충족되지 않는다. AIDS의 출현은 어린이를 더욱 궁지로 밀어 넣었다.

어린이의 권리는 많은 상황에 의해 위기에 처해 있다. 초기에 어린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부체제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즉 가난, 영양부족, 질병, 교육의 부족 등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어린이의 성장을 가로막고, 이들로부터 어린시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다.

큰 흐름은 여자어린이에 대한 차별, 군사화, 왜곡된 개발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비록 많은 나라가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지만 그 집행은 여전히 미미하다. 즉 어린이를 보호하고 그 가족을 지원하려는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보다 입에 발린 소리에 그치는 것이다.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구체화된 것과 같이 생존, 보호, 개발 그리고 참여에 대한 어린이 권리의 집행이, 국가의 능력과 국가의 안전에 관한 고려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14. 노동자

아태지역의 노동자들은 받아들일 만한 인권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지역에서 최악의 인권침해를 감내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지도자가 상당수이다. 연대할 자유와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는 몇몇 국가에서는 극히 제한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는 인권이 공장과 작업장에서 무시되고 있다. 여성, 이주민, 노예노동자,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비공식적이고 비조직된 부문의 경우 노동자의 인권은 훨씬 더 열악하다.

노동자의 경제적 권리, 특히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는 이 지역에서 자주 무시된다.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적 조직이나 기구는 때로 경제적 자유라는 명분아래 이러한 권리를 잠식하기도 한다. 이 지역에서 노동자의 권리침해 중 상당수의 것은 남쪽에 대해 인권을 의처대는 바로 그 북쪽 국가에 의해 자행된 것이다.

15. 망명자와 피난민

망명자와 피난민问题是 이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억압, 무장충돌, 민족불화, 그리고 기타 요인과 서로 결합되어 있다. 경제적 요인도 또한 생활근거지를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이 거의 없다. 그들의 처지는 이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국내적, 국제적 기구의 부족과 관계있다.

망명자와 피난민의 안전은 제한적인 정부정책과 차별정책으로 종종 위기를 맞는다.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가도록 강요받지 않을 망명자의 기본적 권리는 자주 침해 되고 있다. 망명자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정립된 절차는 자주 결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본국으로의 자발적인 복귀도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망명자와 피난민의 인권은 자주 제한적인 국가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억압된다.

적절한 망명기구에 대해 동의한 국가는 거의 없다. 이는 국제인권기준을 승인하고 상황을 국제적으로 선명히 하는 데 대한 외면을 뜻하는 것이다.

16. 퇴보

몇몇 나라는 인권퇴보를 통하여 인권의 향유를 제약하려고 한다. 때로는 민간정부의 외관을 갖기도 하지만, 군사화, 군사점령 및 통치가 확장되면, 인권에 대한 그 부정적 영향 때문에 시민사회와의 공간은 축소된다.

우리는 국가가 국가안전, 법, 질서 등을 이유로 인권기준에서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국가가 모든 상황에서 인권을 총체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17. 인권활동가/옹호자

비정부조직의 활동을 포함하여 인권활동가/옹호자—인권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람들—와 이 지역내 사회운동에 대해 점점 많은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이들은 자주 협박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 살해된다. 몇몇 나라에서는 비정부조직을 전혀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집단은 민중의 이익을 의치고 그 진보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이들을 자유롭게 일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즉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권리와 인권의 모든 것을 함유할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18.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성

많은 국가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 행정이 권위적 요소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이는 인권기준과 대립되는 다양한 국내법과 결합해 있으며, 특히 차별정책, 불평등, 그리고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데 일부 판사들이 개입해 있다는 사실과 결합해 있다.

법률체계는 많은 공동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사람들이 재판체제에 접근하는 문제에 주요한 의문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구조, 지원, 법적 지식의 유

포와도 서로 얹혀 있다.

우리는 사법권 독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민중이 재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을 요청한다.

쟁점(Issues)

참석자들은 예방 및 구제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다음 사항을 강조하였다.

- * 점증하는 정부당국의 불법;
- *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해손하는 정부의 활동;
- * 남·녀의 존엄을 포함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향상시키는 데 실패;
- * 자결권에 대한 위협;
- * 경제권을 포함하여 남자위주의 정치로 인한, 여성 인권에 대한 무시와 끊임없는 침해 및 여성의 능력과 성평등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법의 부당성;
- * 경제적 빈곤, 사회·문화적 압박, 범죄, 소비주의, 군사화로 인한 어린이 인권의 침해;
- * 점증하는 환경파괴와 자연자원의 고갈;
- * 민족분쟁으로 인하여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무장충돌의 확산;
- * 살인·실종·고문에 의한 정치적 억압, 정치범 그리고 자결권·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억압;
- * 건강권의 침해와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접근할 수 없고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열악한 건강 보호체계;
- * 인권침해의 생존자들에 대한 건강서비스의 부정;
- *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공격;
- * 이민 노동자들의 비보호;
- * 농촌사회에 대한 위협;
- * 인도주의적 기능을 실천하는 건강이나 교회에 관련

된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공격;

- * 광범위한 성적 학대;
- * 극단주의와 혼재된 종교적 불관용과 차별의 다른 형태;
- *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및 기타 구제의 결여;
- * 인권을 침해한 자의 형사면책;
- * 대중매체를 이용한 수많은 강요;
- *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돋는 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
- * 원주민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민족적 압박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부적당한 보호;
- * 최하층 빈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
- * 증가하는 수많은 망명자 및 피난민과 그들에 대한 위협, 특히 피난민을 보호하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절차의 결여로 인한 위협, 그들 인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피난처와 안식처를 찾으려는 그들의 권리에 대한 위협;
- * 육체적·정신적 차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충분한 보호;
- * 노인의 복지와 지원의 결여;
- * AIDS의 증가와 상대적 차별;
- * 마약의 확산 및 그것과 관련된 이용;
- * 낮은 교육수준, 특히 기본인권정보의 비효율성, 자각과 기술의 결여;
- *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동의를 너무나 많이 유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의의 결여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규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 * 국제인권체계에 대한 개인 및 NGO의 접근이 제한된 점;
- * 독자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정부간 차원의 기구의 결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활동에 대한 권고안

일반권고

아시아-태평양 민간단체 대표들로서 우리는 아시

아-태평양지역 정부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 i) 다음 사항에 의하여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보호 증진할 것:
 - NGO선언에 제의된 인권과 개발 그리고 민주주의의 상호연관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
 - 개인의 권리 뿐만 아니라 소수자, 원주민, 비조직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의 집단적 권리 보장을 하는 것.
 -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것.
- ii)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법률, 정책, 관행을 검토하여 개선할 것;
- iii) 개발전략은 지속적이고 동등하며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어야 하고 개발전략은 자연환경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모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보장하고, 자유와 존엄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장할 것;
- iv) 인권, 특히 여성인권을 제한하는 관행과 극단주의에 반대할 것. 특히 여성의 독립된 존재를 부인하는 법률, 정책, 종교 문화적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운동, 대중교육, 장기간의 개발과 같은 수단을 취할 것;
- v) 유엔세계인권대회전에 억압적 법률을 개혁하고, 임의적인 체포를 없애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함으로써,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모든 정부수준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훌륭한 정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체계를 민주화함으로써, 국가안전과 법률, 명령에 의해 강요된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제한을 제거할 것;
- vi) 무장충돌의 근본원인인 외국의 지배,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토지의 박탈과 권리의 박탈 그리고 지배층의 외세와의 결탁을 제거할 것;
- vii) 무기구입을 줄이고 군사비용을 개발과 인권의 증진·보호·예방, 기구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대체할 것. 그리고 협의과정과 사회적 서비스, 평화

- 적 토론문화를 정착시킬 것. 특히 이 과정에서 여성, 어린이, 소수 원주민, 조직·비조직 노동자, 피난민, 망명자, 농민, 기타 소외계층을 고려할 것;
- vii) NGO를 포함한 인권활동가 내지 운동가의 활동과, 합법적 사회운동을 보장할 것.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격과 위협, 나쁜 관행을 중단하고 이러한 사회변화의 매개작용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촉진할 것;
- ix) 민중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법적인 도움과 지원의 효용을 포함한 법적 수단 및 다른 장치를 통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제시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할 것. 그리고 법이나 다른 수단을 통한 인권침해자의 형사면책에 반대할 것;
- x) 무기구입을 줄이고 군사비예산을 인권개선과 보호로 돌립으로써, 또한 다른 재원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인권이 국가예산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할 것;
- xi) 정보제공을 늘리고 자자파 기술의 개발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인권교육과 훈련을 증진할 것. 참여 학습방법이 그 지역의 문화적 부를 이용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적 기준의 증진과 보호에 공헌할 것이다.

특별권고

1.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i)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과 다음의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할 것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12차 선택의정서;
 - 고문금지 규약;
 -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CEDAW);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조약;

-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조약;
- 망명자의 지위에 관한 조약;
-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조약;
- 국제노동기구의 조약들;
- 소수자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
- ii) 유보조항, 특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조약과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조약에 적용되는 유보조항을 철폐하고 모순되는 유보조항을 제거하고, 유보조항의 완전성을 재검토하는데 필요한 신속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의 완전성을 보장할 것;
- iii) 고문금지조약에 관하여 제안된 선택의정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 초안(The Draft Declaratio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비준할 것;
- iv) 다음 사항을 위하여 국내입법을 만들거나 수정할 것.
 - 이러한 국제적 의무, 특히 평등과 차별철폐의 조항을 승낙할 것. 그리고 단체와 사람들의 관습법과 국가의 법률 사이의 모순들을 인권의 보편성, 즉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해결하는 것.
 - 여성, 어린이, 농민, 노동자, 모든 소외 계층의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것.
 - 종교적 조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
- v) 조직적인 성폭력과, 고문,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실종, 초법적인 강제처형과 임의적 구금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치적 억압을 즉각 중단할 것;
- vi) 인권침해의 화생자, 특히 고문 화생자와 죄수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
- vii) 정치범, 고문 화생자, 망명자, 피난민에게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할 것;
- viii) 국가에 의해 시인 내지 지원된 조직적인 침해, 즉 고문, 성적노예(devadasi(신의 노예)체제의 화생자를 포함), 강제노동, 비자발적인 실종, 임의적 강

- 제집행, 경찰과 군의 압박, 정치적 억압, 부당한 구금과 국내적 이주민의 화생자의 가족과 그 생존자에게 원상회복을 포함한 보상과 배상, 그리고 완전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것;
- ix) 아·태지역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발의도 환영하지만 그러한 수단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지역위원회가 마련되면 국제인권장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조약, 고문금지조약, 개발에 대한 권리선언과 기타 인권과 관련된 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따라야 한다;
 - 지역위원회 회원국은 위에서 언급한 국제조약을 최우선적으로 비준하거나 동의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회에 대한 개인 또는 NGO의 청원은 보장되어야 한다;
 - 그러한 청원이나 탄원이 인권보호를 위한 여러 유엔기구에 동시에 탄원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정부내의 공직을 겸임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위원은 NGO와 협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 인권조항의 이행에 관한 정부의 정기적 보고체계 보고서의 초안작성에 NGO가 참여하여야 한다;
 - 지역위원회 회의와 토론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 군대, 국가 안전보장 권력을 포함하여, 어느 정부 요원이나 혹은 정부의 어떤 활동도 심사와 조사 대상에서 면제될 수 없다;
 - 지역위원회는 완전한 감사권을 가져야 한다;
 - 제소를 심리할 분리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 각 정부는 지역위원회에 관한 정보와 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홍보하여야 한다.
- x) 공개적인 합의에 따라, 특히 정부관리와 고용인, 범집행 관리를 위하여 고안된 특별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인권교육과 훈련에 관하여 성적 평등의 관점에 입각한 국가정책을 채택할 것. 모든 교육 기관의 과목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인권프

- 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하여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대중매체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특히 강조할 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NGO가 인권교육과 훈련을 잘 실행하도록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 xi) 인권조약과 기구에 관련된 자료를 아시아-태평양의 각국 언어로 번역하고 홍보할 것.

유엔에 의한 조치

국제기구

i) 우리는 성차별을 제거하고 성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유엔의 모든 인권제도를 성적 평등의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위의 사안들이 유엔의 조약기구, 사안별 국가별 보호자 및 실무위원회, 독립전문조사단 그리고 자신의 직무내에서 인권보호를 위임받은 모든 기구들의 모든 보고서와 문서 등에 반영할 것을 요청한다.

ii)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 초안을 환영하며, 이 초안이 총회에서 채택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세계인권대회가 여성의 권리인 인권의 일종으로 승인하며 성차별의 최악의 형태로서 공과 사를 불문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앨, 보다 실효적인 집행절차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에 대한 보충조항을 두어 태아의 성별 결정에 생물학적 조정을 하는 것을 불법화한다). 또한 “성차별반대협약”的 초안을 도입함에 있어 여성 인신 매매 반대연합의 제안을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iii) 우리는 국가비상사태시의 인권상황의 악화를 사무총장이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를 각국이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유엔 사무총장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iv) 우리는 비상사태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악화상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비상사태에 관한 유엔 보고자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v) 우리는 유엔세계인권회의가 현재의 선언을 구체화하는 “개발권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고 인권옹호자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채택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vi) 우리는 인권에 관한 현재의 정의규정을 재검토 할 것을 권고한다. 여기에는 고문에 대한 정의, 강간의 범위, 강제이주와 전쟁범죄의 하나인 정주지파괴가 포함되어야 하며, 성적 회통, 근친상간, 인신매매 및 매춘을 포함한 성적착취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vii) 우리는 유엔이 반인륜적인 범죄인 불가촉 천민에 대한 관습과 카스트제도, 종교 및 기타의 요인에 의한 차별을 2000년안에 근절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한 조치는 유엔개발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개발 계획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

viii) 우리는 유엔이 원주민의 탈식민화를 즉각적으로 실현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실효성

우리는 유엔 기능의 광범한 성장을 요망하며 인권 개선 및 보호를 실효성있게 추진할 아래와 같은 새로운 대응기구 및 조처의 수립을 요청한다.

i) 자결문제를 다룬 유엔특별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기구는 사무부총장의 관할하에 있게 될 것이다.

ii)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한 정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iii) 유엔기구에 대한 개별적 접근의 보장과 개별적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내에 개별적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할 선택의정서 초안작성 방법의 대강을 정할 실

무단이 구성되어야 한다.

iv) 아래의 방식을 포함하여 조약감시기구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 국가의 의무수행 및 미수행 정도에 관한 명확한 보고서를 요구할 것
- 국가보고서의 제출, 특히 기일내 제출을 요구할 것
- 국가와 비정부단체간의 협의 및 (비정부조직의 동의하에) 국가보고서내 비정부조직의 보고서를 포함할 것을 장려할 것
- 공식적으로 비정부조직에게 정부보고서에 상응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권한을 부여할 것
- 각 회의과정을 완전히 공개할 것

v) 현행 국가별·사안별 보고자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한 새로운 임무를 부과하며 이들 기구의 실효성을 중대시킨다.

- 보다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한다.
- 실행권고안에 대한 각 정부의 이해여부를 추적 조사할 체계적 방안을 마련한다.
-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한다
- 유엔 대표단, 보고자, 실무위원의 안전보장을 강화한다.

vi) 인권에 관한 소위원회에 활동하는 위원들은 (정치가나 외교관 같은) 정부직에서 선발하지 못하며 학계, 비정부조직, 언론기관 또는 기타 관련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선출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며 후보자는 출신국이 아닌 타국가로부터도 지명받을 수 있도록 한다.

vii)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판무관을 인권 보호와 관련한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조화, 조정을 할 새로운 고위 정치기관으로 설치한다.

viii) 상설적 지위와 감시기능을 갖는 유엔원주민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원주민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처지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제고한다.

ix) 원주민에 대한 차별을 의제의 상설항목으로 포함시켜 유엔인권위원회의 활동을 향상시킨다. 또한

1503 절차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다른 기구에서도 제기한다.

x) 상황이 위기로 악화되기 전에 유엔이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체제”를 통하여, 사무총장 외 특별대표를 최대한 활용하고, 긴급상황에 인권담당 사무부총장이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긴급행동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기구를 개선한다.

xi) 인권침해와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강제 관할권을 갖는 상설국제인권재판소를 설치한다.

xii) 상설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한다. 이 법원은 개인도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법원에 전쟁범죄, 반평화죄와 국제적, 국내적 무력분쟁시의 성과 관련한 학대 등을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배상조치를 명할 권한을 부여한다.

xiii) 강제적 매춘을 포함한 군대의 잔혹행위를 심판할 전쟁범죄법정을 아시아 지역내에 설치한다.

xiv) 원주민의 권리, 성차별 및 성폭력, 아동의 권리, 여성의 인신매매등의 문제에 관한 특별 보고자를 설치한다. 이 보고자는 정부와 비정부단체 및 정부간 기구로 부터 정보를 받아 조사보고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인권침해의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그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성폭력에 대한 보고자는 여성지위위원회에도 또한 보고를 해야한다.

xv)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보고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내의 국가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한다.

xvi) 유엔직원 및 독립된 전문가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양성평등에 관한 훈련을 한다.

xvii) 성평등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인권에 관한 유엔의 모든 권고적 활동속에 통합한다.

xviii) 유엔예산의 최소 5%를 인권활동에 할당한다.

xix) 개회기간의 연장 및 지원단의 추가적 제공을 통하여 여성차별철폐조약 및 고문희생자를 위한 유엔 자발기금과 같은 유엔인권기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중대시킨다.

xx) 유엔의 감시 및 조사보고활동, 이의제기절차와

그에 따른 권고활동, 여성·아동·원주민에 대한 권리침해제출과 관련한 훈련프로그램등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인권교육과 훈련

우리는 유엔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i) “인권교육과 훈련을 위한 민중의 10년”을 선언하라.

ii) 인권교육과 훈련을 접두할 기구-가능한 한 관련 조약의 감시기구에 의한-를 제공하라.

iii) 비정부조직을 포함하여 각국을 위한 인권교육 및 훈련활동을 위한 국제기금을 설치하라.

iv) 각 유엔기구들로 하여금 1995년 세계여성대회를 위한 보고서를 준비하여, 그들이 여성인권에 쏟는 조치가 가지고 있는 실효성을 검토하도록 지도하라.

v) 원주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의 공식의제가 되도록 하라.

민주화

우리는 유엔의 중요절차가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해 민주화될 것을 권고한다.

i) 안전보장이사회와 민주화 특히 거부권 및 상임 이사국 자격의 폐지 및 총회로 추가적 권한이양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군대에 의한 강제적 매춘과 같은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기 전에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

ii) 여성, 아동, 원주민, 노동자 등 지금까지 소외되어온 집단들의 관심사와 체험 그리고 투쟁들이 유엔의 모든 기구와 그 기구의 현재 진행중인 활동내에 반영되도록 하는 구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그들에게 자문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지역회의 및 세계인권대회의 의제로 포함하며 회의에서의 발언을 위한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아시아-태평양지역내에 정부상호간의 인권문제를 다룰 구조적 방안이 없음을 고려하여 우리는 아시아 및 그밖의 지역 모두에서 비정부단체가 유엔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방법을 유엔인권위원회가 개발하여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특히 우리는 매년 8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할 것을 인권소위원회에 요청한다. 비정부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제사회이사회의 규정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신임결정은 항상 다수결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경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

iv) 유엔에 의해 제공되는 기술적·인적·재정적 지원을 이용하게 하여 인권에 관한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승인, 조장, 지원한다.

특별기구

유엔제도 및 그 특별기구와 관련하여 우리는 유엔과 남과 북의 각국 정부가 다음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감시, 규제 및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i)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그밖의 다자간 및 양자간 조약에 의한 기구들의 정책이 유엔/국제노동기구의 기준과 일치되도록 하라.

ii)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 및 비공식노동운동단체들을 보호하라. 그 방안으로 비조직화된 부문/비공식부문의 노동자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정책사항과 공무원의 노동조합(결성)권과 관련한 동기구의 정책사항을 강화하며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와 절령지구내 노동자의 축출 또는 강제이주관행에 대한 상황보고를 한다.

iii)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행동하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국제노동기준에 합치되도록 하라.

iv) 성과 관련한 학대를 포함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유엔대표단, 직원 및 실무자들의 책임있는 임무수행을 위한 절차를 보장하라.

군사화

우리는 각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i) 대량살상무기 및 핵무기의 생산, 판매, 전시 및 광고와 모든 종류의 군사훈련을 즉각적으로 종결시키는 조치를 취하라.

ii) 현존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해체와 아태방어 명목의 군사훈련 및 자국민과의 전투를 위한 서방 군사고문관 및 안전요원의 채용을 중지하라.

iii) 군사예산을 개발수요 보다 나은 인권침해방지 기구, 인권보호를 위한 자문절차, 사회적 급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위해 재배분하라.

iv) 모든 준군사력을 해산하라.

v) 아·태 지역은 외국의 군기지를 유치하지 않으며 핵무기 및 핵시설을 보유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vi) 군사예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vii) 유엔평화유지군의 활동, 긴급대응조치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하여는 특별히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무혈충돌 또는 민족간 충돌의 상황에서 성원전체가 특별히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보장할 것과 여성 및 아동에 대해 취해진 조치의 영향 및 남성군사요원의 군사훈련 및 거동이 현지 여성에 대해 끼치는 효과를 보고 제출할 것

viii) 인도주의적인 국제법에 위반한 채 구금하고 있는 모든 전쟁포로와 민간인을 석방하라.

ix) 모든 시민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라.■

● 특집: 동아시아, 근대와 탈근대의 과제

창작자: 박영서 94 가을

중국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동아시아적 상황과 관련하여

백 영 서

1. 머리말

동·서양이라는 두 세계의 문화적 거리를 배우는 일이 도대체 가능한 것일까. 1991년 1월 미국의 캠브리지에서 열린 중국 여성문제를 다룬 학술회의장에서 본 장면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로 필자에겐 떠오른다. 미국인 여성학자가 중국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국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의 '잔인한' 사례들을 소개하자, 방청석에 있던 중국대표 중 한 여성은 그것이 국외자의 피상적인 견해라고 가랑카랑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산아제한을 위한 여러 조치야말로 중국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요지였다. 그런데 통역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논란은 언어소통의 어려움만큼이나 그 평행선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 처음에 필자는 그런 갈등이 주로 정치체제나 이념의 차이에서 빚어진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차 그 밑바닥에는 문화적 차이가 깔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정치체제와 문화가 서로를 필요로 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올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상의 최혜국대우 연장

白永璣: 연세대 사학과 교수, 서서로『중국현대 내학문화 연구』 등이 있음.

시기를 맞아 인권문제를 놓고 중국과 벌인 인권논쟁과 그에 대한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더욱 굳어졌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싱가포르정부가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한 미국 청년(Michael Fay)이 수십 대의 차에 페인트를 뿌리고 계단을 덮지는 범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벌금과 더불어 6대의 곤장(笞刑)을 맞도록 선고, 확정하였는데 그 벌이 집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미국 등 여러 나라가 보여준 대응방식의 차이도 같은 사건에서 파악될 수 있다.¹⁾ 이것은 이 '페이 사건'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사실 제목 「미국적 가치를 강조할 때」²⁾가 응변하는 바 동서간의 가치관·문화관의 차이로만 환원될 수 없는, 근대사에 대한 체험 그 자체에 기인한 심각한 갈등이 아닐 수 없다. 인권문제는 한층 깊이있는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려 할 때 출발부터 부딪치는 난점은 인권 개념의 모호함이다. 인권운동가들에게 일차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권리의 이익을 세우는 실질적이고 질바란 과제가 자명한 인권 개념으로 부각되겠지만, 그것이 시구인들의 경험에서 인유된 편협한 관점이란 지적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세워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인권 개념은 '좋은' 정부의 조건이나 인간다운 삶의 질 같은 추상적 주제와 연결되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니 논의 당사자간에 문화적·제도적 차이를 이유로 견해가 엇갈려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란으로 귀결되고 만다. 따라서 인권운동가의 실질적 과제만을 부각시키는 것으로는 인권 개념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않고 그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결합될 필요가 절실히다.³⁾

이제문제에서도 보편성과 특수성이란 낯은 논쟁을 넘어서는 것이 진요함은 지난 이를 우리 언론에서 벌이진 북한의 인권문제 공방의 비생산성을 보면서 더욱 짙어졌다. 그 극복은 인권 개념의 확장을 통해 이해 당사자인 속토 쉽사리 외면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용하지도 못하는 독자성을

1)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그밖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도 대체로 미국의 대응에 비판적이었다. 「미·싱가포르 '태성싸움」」, 「미소년 '태형' 파장」, 『조선일보』, 1994. 4. 15., 5. 13. 「미국의 아시아정책」, 『한국대신문』, 1994. 5. 19. 참조.

2) "Time to Assert American Values", *The New York Times*, 1994. 4. 13.

3) 이고온 문제의식에서 인권의 철학적 기반을 새롭게 부여하려는 시도로는 Michael Freema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Human Right", *Human Rights Quarterly*, Vol. 16 (1994) 참조.

화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권의 세부항목을 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보기에 따라서는 국제적 규범(예컨대 UN의 여러 인권관계 문서)과 해당국의 규범(예컨대 헌법) 및 경험적 실제 삼자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접근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일 수 있다.⁴⁾ 경우 경험적 실제에 대한 접근과 평가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연구자라면 시도해볼 만하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인권문제를 다룸에 있어 위의 '독자성'을 찾는 일이 어느정도 가능해진다면 보편성과 특수성의 논란을 넘어 평행선을 달리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동일한 수준에서 따져볼 수 있는 길이 그만큼 열릴 것이요, 따라서 그들 각각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단서란 주어진 현실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필자는 중국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꼼꼼히, 특히 그들의 설명하는 방식에 유의하여 재구성하는 일부터 착수하고 싶다.

2. 중국 인권논쟁의 경과와 주요 쟁점

중국공산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헌법이나 법률에서 광범위한 공민권을 규정한 내용은 있었지만 '인권'이란 용어가 새삼 출현한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정체전환의 방향을 잡은 1978년의 11기 3중전회 이후였다.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겪은 지식인들이 공산당의 정치적 경직성을 비판하면서 당의 4개 현대화 정책에 대하여 '제5의 현대화'를 요구하면서 그 주요내용으로 인권의 보호를 거론하자 공식적인 매체에서도 인권논의를 벌임으로써 '인권'은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주된 논의는 인권이 자산계급의 구호라고 비난하는 데 모아져 있었다. 1988년 '세계인권선언' 통과 40주년과 프랑스대학원 승리 및 '인권선언' 발표 200주년을 맞아 또다시 인권논의가 있었지만, 이전히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렇지만 1989년을 기쳐 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인권논의의 범위와 내용이 바뀌었다. 그 배경에는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친안문 사태 이후 미국 등 서방세계로부터의 인권문제를 앞세운 압력과 더불어 동구권 불리으로 인해

4)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로는 Ann Kent, "Waiting for Rights: China's Human Rights and China's Constitutions, 1949~1989", *Human Right Quarterly* 13 (1991) 가 있다.

주의적 인권은 무산계급의 사회경제적 권리로 보장한 '절대다수인이 창유하는 진정한 인권'이라는 것이다.⁷⁾ 인권의 주체를 계급집단으로 파악하는 이와같은 중국의 견해가 서방세계 지식인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예컨대 백서가 내세우는 생존권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핵심인 노동권이 오히려 직업 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측면을 비판한다.⁸⁾

각각 (법적·정치적 차원의) 자유와 (사회·경제적 차원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두 견해 사이의 거리는 좁힐 수 없는 것인가. 백서에서는 그같은 이론적 배려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인권론은 자유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고 형식적이라면 평등은 신직으로 절단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는 귀에 익은 논리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그런데 백서를 좀더 꼼꼼히 읽어보면, 개방 이후 나타난 새로운 사회현상이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주장과 이미 모순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얼버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중공정권 성립 이후 도시의 취업희망자는 정부 알선에 의해 모두 안정되게 직업을 가질 수 있었지만 1979년 이후 '공유제를 주체로 한 다종의 소유제경제' 아래에서는 국가의 조정과 개인의 자유선택이 결합되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 과정에서 출현하게 되는 실업자는 그 결합이 행복하지만은 않음을 말해준다.⁹⁾ 대학졸업자들의 경우, 국가가 각자의 수요와 당사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모든 개인에게 적합한 직장을 안배하여 실업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정확한 실업자 수에 관한 정보는 알기 어렵지만, 취업했다 해도 그에 만족하는지도 문제이다. 더욱이 날로 높아가는 소비추세에 따라 '제2의 직업'을 갖는 개인이 늘고 있으며, 자신이 소속한 기초작업조직인 '단위(單位)'를 벗어나 자유로이 직업을 찾는 개정에서 (원)단위에서 가시온 '신상명세문서(檔案)'를 이전의 단위에 전시하는데 당장 말길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맡아주는 '인재교류중심(人才交流中心)'이란 기구가 출현한 현상은 경제변화와 정치통제의 이중

인권문제에 대해 종래처럼 소극적 자세로 입할 수 없다는 당의 방침이 있던 것이다.¹⁰⁾

제제옹호를 위한 이론무장을 위해 강택민(江澤民) 총서기가 '인권문제의 연구를 심화시키는 것에 관한 지시'를 내린 것을 계기로 여러 매체와 학술 기관에서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는데, 그 결정은 『인민일보』 1991년 11월 2일자에 발표된 이른바 「인권백서」(이하 백서로 줄임)이다.¹¹⁾ 백서의 기본시각을 담고 있는 '전문(前言)'을 보면, "중국은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인권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일찍이 여러가지 좌절을 겪었다. 현재 인권을 유지하고 촉진시키는 데 거대한 성취를 이루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이 많이 존재한다"고 현상황을 규정한다. 또한 "인권문제는 국제적인 성격도 있지만 주요하게는 국가주권의 범위 안의 문제이다"고 주장한다. 종전과 달리 인권문제를 야기한 현실을 부분적이나마 인정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것으로서, 그 초점은 "중국인민은 자기의 역사와 국가형편(國情)으로부터 출발한 장기적인 실천경험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형성했다"는 데 있다.

'자신의 관점'에서 쌓아온 성취를 상세한 통계숫자를 들어가면서 부문별로 나열한 것이 '전문' 이하의 10개 절인데, 지난칠 정도로 많은 통계수가 오히려 설득력을 해치는 백서를 통해서는 중국 인권상황의 실상이 느껴진다기보다는 그들이 인권문제를 설명하는 틀이 더 흥미를 끈다. 첫번째 절 '생존권이 중국인민이 장기간 싸워 온 가장 중요한 인권이다'라는 대목은 민족·민봉건투쟁을 진개해온 중국공산당사의 요약판인 셈인데, 보기에 따라 의미심장할지도 모르나 판에 박힌 정치선전으로 비쳐 전너뛰어 읽기 싫상이다.

그런데 바로 이 '생존권'이야말로 인권개념을 둘러싸고 벌인 동서간 논쟁의 핵심요소로서 개인의 인권과 구별되는 '집체인권'을 뜻하며,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溫飽問題)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으니 인민의 생존권 문제 또한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 백서의 주장이다.

이것은 다 알면서 일자리로 막스주의를 이론적 무기로 삼고 있다.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인권이란 시민권 그리고 그 실제적인 적용은 사적 소유자에 한정된 자산계급의 자유권에 불과한 '기반성'을 갖는 데 비해 사회

5) 中國社會科學院法學研究所, 『當代人權』,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375~78면.
6) 원제목은 「中國的人權狀況」, 『人民日報』, 1991. 11. 2.

간한 전송이 이뤄지는 과정까지 단계를 말해준다.

중국이 사랑하는 생존권이 새로운 사회현상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면,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모색도 필요함직한데, 중국에서는 그러한 이론적 작업이 아직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여기서 서구 맘스주의의 새로운 해석 가운데서 양자의 거리를 좁히려는 지적 노력이 주목된다. 양자의 좁은 사이에 들어온 것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상호배타적인 제한적 권리로 보는 패권에서 벗어나 상호증식적인 확장적 권리의 관점으로 옮아간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결합하려는 시도이다.¹⁰⁾ 적어도 이같은 이론적 쇄신을 위한 노리과 이에 초반된 정책적 개혁이 수반된 때야만이 격변하는 대외 경제 속에서 중국의 인권관이 한걸음 진화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맘스주의의 새로운 시도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인권관계 규약들은 양자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적어도 선언적으로는 주장한다는 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엔에서는 「자유권규약」(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른바 B규약)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의사표시를 반영하여 집단의 생존권을 옹호한 「사회권규약」(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1966년 채택)과 「발전선언」(1986년 채택)을 채택해 이미 효력이 발효된 상태이다. 물론 개별 회원국들이 이를 규약에 모두 가입해 준수하지 않는 한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갖기는 어렵고 남북의 국가들간에 각기 강조점의 차이가 있어 갈등의 소지는 있지만, 인권의 '보편적인' 기준을 실현한 의의는 결코 경시될 수 없다. 현재 어느 국가도 이 기준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중국 역시, 비록 이들 규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백서에 밝혀져 있듯이 국제규약에 공정적이다. 특히 「사회권규약」은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시방의 압력을 받는 방해로 잘 활용된다. 이같은 입장은 (뒤에 상세히 언급되듯이) 세계를 단위하는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의해 종종 옹호된다. 여기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생존권 또는 집체인권에는 '계급적 성격 이외에 민족주의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존권 다음으로 중국의 인권론에서 주목할 요소는 주권에 대한 강조이-

7) 翁偉, 「論人權」, 『文史哲』, 1989-6.
8) James D. Seymour, "Human Rights in China", *Current History*, Vol. 93, No. 584 (September 1994), 258면.
9) Kent는 앞의 글, 201면에서, 1982년의 헌법이 사회복지제를 실업자에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암시한다고 지적한다.

10) 에디엔 빌리바르,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평등과 자유의 근대적 변증법, 윤소영 역, 『맘스주의의 역사』, 민백 1991, 윌리스턴도 평등과 자유가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이매뉴얼 윌리스턴,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탄생」, 창작과비평사 1994, 특히 제7장.

다. 겉보기엔 큰 차이가 없지만 백서 공포를 계기로 중국의 인권상황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강조점이 제규보다는 주권으로 미묘하게 옮아가고 있는 것 같다.¹¹⁾

중국이 인권과 관련해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인권 공세가 사실은 동구권 몰락 이후에도 여전히 진제하는 사회주의 체제 중국을 평화적으로 전복시키려는 이른바 '화평연변(和平演變)'의 음모라는 의구심에서 비롯되었다. 백서에서 미국 등 서방을 꼬집어 비난하지는 않지만 "세계에는 중국의 정황을 진정으로 이해 못하는 편견이 있는 일사"가 있다는 구절 같은 것은 그러한 정서가 완곡하게 표현된 것이다.

사실 그러한 의구심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자신의 인준을 위한 청문회 연설에서 동구권이 몰락한 새로운 국제환경에 대응하는 미국의 새 가치 외교정책의 기초의 하나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전파를 역설하였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군사기술 수출과 인권침해 및 무역불균형을 방관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폭넓고 평화적인 혁명이 중국에서 일어나도록 촉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¹²⁾ 그리고 1993년 6월에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¹³⁾를 1년 더 연장해주면서 1994년의 연장조건으로 7개 항에 걸친 인권문제의 개선을 내걸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무부가 점검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인권외교를 전개한 셈이다.

중국측은 이것을 '패권주의적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였다. 그 주요한 방 패는 역시 주권이다. "국권 없이 인권 없다"는 말에 압축되어 있듯이, 주권은 반제투쟁의 성과로서 대외적 독립자주와 대내적 최고권력을 행사하는 능력이니 중국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며 무엇에 의해서든 제약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권은 국제인권규약보다 우위에 서며, 인권은 자국의 현

11) 喬偉의 위의 글과 그로부터 3년 뒤에 그 자신이 발표한 「再論人權」, 『文史哲』, 1992-4를 대조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다.

12) Christopher의 1993년 1월 13일자 중언 속기록.

13) 무역최혜국(most favored nations) 지위는 미국 정부가 가트협정에 따라 교역상 대국에 자동으로 부여하는 특권 아닌 특권이지만, 북한·베트남·쿠바 등 공산권 국가들은 예외로 취급했다. 중국의 경우, 가트회원국이 아니지만 미국과의 왕무협정에 따라 양국 국교정상화 나음해인 80년부터 최혜국 지위를 누려온 푸틴케이스라 할 수 있다. 단 미국 국내법에 따라 해마다 이를 갱신해왔는데, 지난 89년 중국의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은 그 연장에 인권문제를 연계시켰다.

는 한편 중국의 인권문제와 무어문제를 연계하는 정책을 치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이 중국의 인권 실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인권문제와 최혜국대우를 연계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클린턴의 기자회견에서의 실명이었다.¹⁴⁾

이상과 같은 미국의 인권외교의 추이를 보면, 중국이 미국의 인권외교를 비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의 진전에 따라 중국의 인권문제 자체가 서질로 해소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인권외교의 가장 침애한 핵심사인 '정치범'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어도 주권을 앞세우고 있다. 백서는 "중국에는 '정치범'이 없다"는 항목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중국에는 단지 사상만 소지한 뿐 항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누구도 다른 정치관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중국에는 이른바 정치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형법이 규정한 '반혁명죄'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한 범죄로서 국가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뿐만 아니라" 폭동·간첩행위 등 형법 조항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어느 국가나 처벌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중국의 주권이란 한계선을, 3,300명의 '반혁명분자'의 신상을 밝히고 교도소에 국제적십자 대표가 접근할 수 있게 하라는 등의 인권운동단체의 요구¹⁵⁾가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일까. 물론 백서가 말하는 '혁명'의 정당성 즉 현존하는 국가정권과 사회주의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양심수로서 파악하고 인권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일부 지식인 및 중국인 민주화운동단체가 바로 이러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이것은 중국정부와의 정치적 대립을 전제한다. 아니, 중공체제의 몰락을 회구하고 있다는 것이 한층 더 정화하겠다. 그렇다면 공산당정권이 무너지

18) 『한겨레신문』, 1994.5.28.

19) Robert L. Bernstein & Richard Dicker, "Human Rights First", Foreign Policy, No. 94 (Spring 1994), 46번.

20) 이와는 정반대로 혁명의 역사적 정당성을 믿는다면 인권문제는 존재할 수 없다. 89년의 천안문사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의 핵심에는 학생의 '반혁명적 시도, 자본주의로의 복귀'로 규정하면서 중국정부의 유현진압을 불가피한 조치란 판점에서 친뢰하는 경향도 있었다. '노동자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인동(R.S.)', 『천안문의 대투쟁』(1989.6.27) (미공간 팔플랫).

법과 각종 입법조치에 의해 보호될 따름이라는 것이다.

주권에 대한 강조말고도 미국의 인권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서 미국이 자국내의 인권침해에 항구한다는가 이른바 우방이나 맹우(예컨대 이스라엘 등)에 대해서는 간접하지 않는다는 점 등 일관성 결여 문제가 추가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¹⁶⁾

미국의 인권외교가 위의 크리스토퍼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동구권 몰락 이후 세계질서를 미국 주도 아래 새롭게 짜보려는 자신감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 인권외교의 적용 대상국들, 예컨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를 일부로부터 미국적 가치관을 강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이 때문에,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한 한 한국인 민간대표는 인권문제가 "블록간 외교전선으로 치용된다"는 인상"을 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¹⁷⁾ 미국 내부에서도 클린턴정부가 표방하는 인권정책의 망비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서울과 북경의 주재대사를 지낸 린리는 인권문제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다 보면 중국에 대한 아시아국가가 동조해 미국이 오히려 고립될 우려가 있으니 만큼, 무역·무기화산·문화교류처럼 중요한 문제와 연계해 중국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무역의 확대를 통한 중국인의 생활수준의 향상만큼 효과적인 중국의 인권 노력이 있다고 강조한다.¹⁸⁾ 정치가인 린리보다 풀넓게 사고하는 중국정치학자 바네트도 "조용한 외교"야말로 중국의 인권실상을 관찰임을 역설한다. 미국적 가치관을 전파하는 데는 —— 역사적으로 미국의 선교정책이 직접적인 전도보다는 교육·의료 등 문화적 교류를 통해 효과를 올렸듯이 —— 민간교류가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 경제성장을 통해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그의 주장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¹⁹⁾

이같은 비판과 인권 개선을 강조한 자신의 선거공약 사이에서 고민하던 린리에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5월 26일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연장하

14) 이상은 劉文宗, 「論美國的“人權外交”」, 『國際問題研究』, 1993-3.

15) 이대훈,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 『민주대학』 7호(1994), 15면.

16) James Lilley, "Freedom Through Trade", Foreign Policy, No. 94 (Spring 1994).

17) Doak Barnett, "Quiet Diplomacy Key to China Rights Progress",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행한 1994년 4월 14일자 강연 텍스트.

기 전까지 인권문제는 체제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몰락을 재촉하는 도구로 쓰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현실을 무시한 관점이지만, 그 현실 자체는 인권이 주권이라는 상박은 넘을 수 있는 객관적 이전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방 이후 인적·문화·지적 교류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이 국제사회에 긴밀히 임해들수록 (또는 적어도 그것을 지향하는 한) 종래와 같은 인권문제를 둘러싼 내정불간섭론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00년에 열린 올림픽 개최를 북경에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연계된 결과 국내 그 국가적 일망이 좌절된 사실은 그 점을 중국인에게 상징적으로 일깨워주었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인의 일상생활이 날로 변화한다는 투구도 무언하지 못할 현상 ——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대만엇' 또는 '홍콩엇'이 실망의 대상되어 있는 요즈음이다²¹⁾ —— 은 개인의 욕구를 주권의 범위 안에 가둬둘 수만은 없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위의 백서에서 인권의 보편성 자체를 적어도 실연적이나마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객관적 여건의 반영이라 하겠다.

중국의 주권론이 새로운 사회현상에 의해 도전받는 것 못지않게 주권에 대한 국제법의 새로운 전근에 의해서도 그 설득력이 약화될 수 있다. 최근의 국제법에서는 적어도 인권과 관련해 주권의 상대화가 부분적이나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재한된 경우 —— 종교적·인종적·언어적 소수자의 보호 같은 —— 하지만 내정불간섭 원칙에 대신해 '인도적 간섭'이 허용되는데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불간섭의 시대'가 지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지금으로서는 천안문사태나 그에 대한 뒷처리가 인권을 살각하게 침해한 '국제적 범죄'로 간주되어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으로 제지하자는 주장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실제로 경제제재에 서방 여러 나라가 동조하지 않았던가.) 더욱이 중국이 일련의 인권규약에 가입한다면 그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주권이 기본원칙이고 국가의 역할도 여전히 크지만 국제법의 '주체를 국가 주권과 관련해서만 보지 않고 국내적·국제적으로 보장된 인권의 개인주체성'을 부각시키려는 노력도 있다. 인권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인간이

21) 민우기, 「개혁중국의 뒤판 ①」, 『한겨레신문』, 1994.2.18. 이 기행문을 쓴 민 교수와 동행했던 원자는 호남성 시골의 장례식 행렬에서 망자에 바치는 예물의 하나가 홍황색 이불인 것을 그 부활봉부로 알 수 있었다.

라는 시각을 새삼 확인해두자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중국이 생존권 대비 발전권을 중시하는 것도 인권 일반을 존중한다는 논거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개인적 인권의 보장이 취약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²²⁾

주권의 상대화는 국민국가의 위상이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한층 더 실감이 난다. 다국적 차원에 의한 개별 국가기구의 통제력 약화, 지역별 경제통합으로부터 정치통합으로까지의 진행, 각종 국제기구들의 영향력 증대, 정보통신분야의 발전, 반세계운동들의 초국가적 연대관계의 증진 등 (좀더 나열할 수도 있을) 추세는 “국민국가를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이자 표본으로 삼는 발상이 당연시되던 시대는 확실히 지나갔다”는 주장은 가능케 한다.²³⁾ 물론 이런 주장이 현실점에서 국민국가 부용론이나 국가기능의 무조건적 약화를 말하는 극단적으로 단순한 발상에서 나왔다면 무모하지만, 기존의 “국가형태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가기구의 민중장악력의 약화”를 통해 세계체제의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정치공동체를 구상하자는 제의²⁴⁾라면 적극 수용할 가치가 있다.

실제로 일부 인권학자들은 현재의 국민국가가 세부적인 인권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비대하고 탈냉전의 갈등사태를 다루기에는 너무 왜소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²⁵⁾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배타적인 의식과 행동을 강요하는 국민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의의가 약화된 국경선 안의 다양한 요소의 공존과 국가의 틀을 넘어서 한층 넓은 범위의 공동성을 함께 추구해 나갈 정치공동체의 구상은 중국의 현실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티베트나 갈정치공동체의 구상은 중국의 현실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티베트의 반발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소수민족의 권리 주장, 지역권 경제 및 사회의 활성화, 당-국가 주도에 비판적인 자율적 사회세력의 대두 가능성, 대륙 밖의 중국인·중국개인(특히 대만과 홍콩 주민들)의 동향,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체제 자체의 구조변화 등은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에 연방제를 도입하자는 안이 일각에서 거론되어 흥미롭다.²⁶⁾

22) 士屋英雄, 「中國の人権と主権」, 『中國研究月報』, 1993.3.

23) 麥允昌, 「分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창작과비평 사 1994, 35면.

24) 麥允昌, 같은 글 및 「분단시대의 최근 정세와 분단체제론」, 『창작과비평』 1994년 가을호, 특히 256면.

25) 이대훈, 앞의 글, 21면.

이 같은 조짐은 인권과 주권을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상투적인 논의를 넘어선 인산 개인에 가장 진실한 인권을 축으로 한 새로운 국가체제, 더 나아가 새로운 세계질서를 일도록 촉구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

3. 중국의 인권론과 아시아적 상황

중국의 인권론에 대한 검토가 인권 개념을 속넓게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면 백서의 문맥을 통해 논쟁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근대사에 대한 그들의 체험의 몇 가지 특징으로 관심을 넓힐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들은 백서의 인권론의 밑바탕에 드리워 있기에 이미 어느정도 드러난 상태이긴 하다.

무엇보다 먼저, 중국인들은 반제·반봉건을 과제로 싸워온 근대사에서 중국민족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인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에서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설명들을 김포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UN이 채택한 「발전권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저발전국 또는 개발도상국 저개발의 원인을 남쪽에 불리하게 형성된 국제질서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보니 개인의 정치적 권리와 포함한 민주주의의 신장 역시 경제발전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달성할 과제로 설정된다.

그런데 경제발전이 인권신장,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설명은, 중국당국과 정반대의 정치적 위치에 선, 미국의 이른바 보수적 인사를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꿀 흥미로운 사실이다. 전 미국대통령 뉴턴이, 유럽에서 부르조아지의 발전만이 인권의 유지를 담보하는데 중국의 개방적인 교역을 자속시키야 번영의 추진력과 중산층의 성립을 가능케 하는 경제결정론적인 견해를 가졌다는 것은 그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²⁷⁾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린리는 인권외교를 비판하면서 이 점을 좀더 명확히 세시한다. “중국경제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개입을 촉구함으로써

26) 더 상세한 논의는 필자의 「중국의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형성과 변용」(1993년 5월, 전국역사학대회 발표문) 참조.

27) Samuel P. Huntington, "The Islamic-Confucian Connection", *New Perspective Quarterly* (Summer 1993), 22면.

44 특집: 동아시아, 근대와 탈근대의 과제

미국은 민주주의 세력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시킨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합작기업이야말로 수도 없는 혐박과 조처 및 일방적으로 강요된 조건들보다 남부중국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해왔다. 예컨대 중국의 번영하는 남부에서는 공산주의가 통제하는 ‘단위(單位)’가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위성테란비전·진자통신·환자매체에 의해 가능해진 정보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²⁸⁾

‘부르조아지 없이 민주주의 없다’는 배링턴 무어의 유명한 명제를 연상케 하는, 경제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의 선결조건이라는 이러한 견해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싱가포르의 한 관리는 경제발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어설프게 정치적 권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회혼란만 초래한다면서, 마르코스 이후 필리핀의 민주화가 실상은 경제적 약화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한다.²⁹⁾ 따라서 인권문제에 관한 한 미국에 비판적이고 중국에 동조적인 태도를 취한다. 즉 미국의 인권정책은 탈냉전 이후 친소진영으로 돌아놓을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좀더 과감하게 세계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개입하고자 할 때 비용이 덜 들면서도 훨씬 손쉽고 인기있는 방법이라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인권이 도구로 쓰이는 이같은 사례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잘 드러나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인권정책을 최혜국대우와 연결시킨 것은 경제경쟁의 도구로서 인권을 활용한 단적인 증거라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에 서면, 필리핀의 사례뿐만 아니라 구소련도 레닌스키로이카라는 민주화조치를 실행하다 결국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모두 아시아의 발전모델의 유효성을 역으로 확인시켜주는 실증적 자료가 될 수 있다.³⁰⁾ 결국 개인의 정치적 권리라는 일정한 경제성장이 이뤄진 뒤에만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박정희정권에 대한 재평가——정확히 말하면 경제성장을 중시한 개발독재공정론——가 고개를 드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본격적인 논의를 요하지만 여기서는 중국상황에 관련된 두 측면에만 주목하고 싶다. 첫째는 중국이 누리는 오늘날의 상세

28) James Lilley, 앞의 글, 40면.

29) Bilahari Kausikan, "Asia's Different Standard", *Foreign Policy*, No. 92(Fall 1993), 35면.

30) 田中義晴, 「人権に國境はあるのか?」, 『世界』 1994년 9월호, 213면.

성장의 대가로 치러진 막대한 희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1958~61년간의 대약진운동 기간에 1천5백에서 3천만명 가량이 기근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개인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중앙보고조차 거짓된 것이다. 나중에서도 그 사실을 중앙이 알았지만 모택동의 정책을 비판할 수 없어 구호사업을 펼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점을 중시한다면 개인의 정치적 권리가 ‘사치품’이 될 수 없는 게 당연하다.³¹⁾

둘째는 경제성장이 과연 중국에 인권신장을 가져다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물론 경제개혁에 의해 제도화되고 있는 시장경제가 좀더 자유로운 정치과정을 이끌어갈 것이므로 인권문제를 뒤로 돌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중국 안팎의 중국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세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자유시장이 주도하고 중산층이 출현한나 할지라도 민주주의와 자유가 자동적으로 실현되지는 않는다. 그 성취는 좀더 힘든 과정을 요구할 것이다”고 한 중국인 민주화운동가는 말한다.³²⁾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논쟁적인 개념이므로 중국의 경제성장의 결과를 따지는 기준이 되기에 적절치 않다면, 경제성장이 상업주의를 초래한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분명한 현상으로 이것이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인가라고 바꿔 물어볼 수 있다. 중국에서 (적어도 주요 도시에서는) 쉽게 눈에 띄는 풍부한 소비재의 범람이 ‘소비자로서의 개인’을 만들고 있다.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새로운 명언이 가능하다고나 한까.³³⁾ 특히 텔레비전의 상품광고는 홍콩이나 대만 등지의 영향이 역력한데 그 광고에 세시된 세계는 대개 이상적 가정이나 개인을 소비자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생활양식 자체가 공산당의 공식적인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엄청난 ‘반체제’적 언사가 광고의 소비풍조 속에 담겨 있는 셈이다. 당국에서 아무리 사회주의적 정신문명을 주입하려고 해도 세대

31) Arych Neier, "Asia's Unacceptable Standard", *Foreign Policy*, No. 92(Fall 1993), 45면.

32) Wu Jiang의 발언, James D. Seymour, 앞의 글, 259면에서 재인용.

33) 이 표현은 Geremie Barmé, "Soft Porn, Packaged Dissent, and Nationalism: Notes on Chinese Culture in the 1990s", *Current History*, Vol. 93, No. 584 (September 1994), 272면의 “I shop therefore I am”에서 번역했다.

간·이념간의 격차는 둘이끼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수록 아이리니와 냉소주의가 번지기 쉬운데, 이것들은 실제로 90년대 초 문화계에서 유행하는 풍조가 되었다.

그런데 이같은 상업주의의 변장을 일부 지식인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 글을 쓴 도중 필자가 광주(廣州)에 들을 일이 있었는데, 경제선진지구인 그곳의 지식인들은 캠퍼스에서 빼빼를 차고 다니며 장사에 몰두하는 대학생들이 많아질 정도로 돈벌이 풍조가 그들에게 필요한 '비판정신'과 '진리전파의 책임'을 잊어간다고慨叹하고 있었다.³⁴⁾ 중국 전역에서 간행되는 잡지들에서 다루는 근래의 주요 쟁점의 하나가 '인문정신의 위기'란 점도 그런 우려가 한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잘 말해준다.³⁵⁾ 심지어 한때의 민주화운동가가 이제는 사업가로 변신한 사례도 적지 않다.

미국에 망명중인 저명한 반체제운동가 유빈안(劉賓雁)은 이런 풍조가 오늘의 중국사회에서 "가장 가공스럽고 비극적인 양상"이라고 지적한다. 중국문화에 스며 있던 도덕과 윤리에 대한 진통적 감각이 쇠퇴한데다 외적 통제력(공정한 법집행, 신뢰할 만한 정치적 권위, 건강한 사회환경)이 결여되어 상업주의와 폐락주의가 만연해 있으며 정직과 신용 대신 사기와 폭력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³⁶⁾ 그러나 그는 천안문사태에 참여한 딘중들이 보여주었던 작성된 의식 즉 '정신적 순화'에 힘입어 또다시 정치적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한 그의 심정을 필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지난한 길이란 느낌을 떨칠 수 없다.

34) 환자화된 견해로는 「大學可以做什麼」, 『嶺南文化時報』 제26기(1994. 9. 28) 참조.

35) 대표적인 예로는 북경에서 간행되는 월간지 『讀書』에서 올해 3월부터 '人文精神轉思錄'을 연속기획물로 실고 있다.

36) Liu Binyan, "Tiananmen and the Future of China", *Current History*, September 1994, 246면. 중국에 음란소설이 유행하는 것을 폐락주의의 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큰 도시는 물론이고 중소 규모의 도시 갈마다에서 소차 소집하게 연개된 음란도서를 판매하는 노점은 외국인인 필자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이육연, 「중국대륙에 부는 음란출판물 바람」, 『말』 1993년 8월호 참조. 음란소설이란 이유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베스트셀러로서 가장 화제에 많았던 것은 雷平凹의 『廢都』인데 우리말 번역본도 나와 있다.

그럼 노벨이 드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상업주의의 폐단이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는 전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구상하는 정치적 개혁의 성격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다. 그는 서구식 의회주의도, 싱가포르식의 권위주의체제도 아닌,³⁷⁾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이 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두 정치체제 말고 제3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구상이야 가능하겠지만, 대단히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쉽상이다. 사실상 아시아지역의 정권 사이에서 가장 신호되는 정치체제는 바로 싱가포르식의 권위주의체제가 아닌가 싶다. 중국에서는 멀찌부터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을 따르려는 분위기가 강하고, 이를바 개혁적 지식인 가운데서 '신권위주의론'이 대두된 바 있다. 바로 이것을 중국인, 더 나아가 아시아인의 근대사에 대한 체험의 특징인 (집단의 생존권 중심에서 나온) 경제발전 → 혼론과 적결된 또하나의 특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특징이 최근 일부 학자들에 의해 '탄력적 권위주의'(soft authoritarianism)로 표기되고 있다.³⁸⁾ 이것으로 NIEs의 경제성장에 고무되어 자신들의 정치적 윤리의 독특함을 포착할 수 있는 정치적 언어를 요구하는 아시아인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다. 시구, 특히 미국에 의해 주도된 '자유주의적이고 시장경제적인' 해계모니적 담론에 놀려 자신감을 표현할 언어나 심리를 갖지 못하면 아시아인들이 대안적 언어와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신물로 볼 수도 있다.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해진 후쿠야마는 '탄력적 권위주의'가 서구적 자유민주주의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것은 시장경제가 역할보다는 설득에 의존하는 일종의 온정주의와 결합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우나 정치적으로 유사권위주의인 체제이다. 그런데 그것은 경제적 성공에 의해 정당화되고, 근본주의적인 이슬람이나 공산주의와 달리 철저히 근대적이고 기술적인 기반을 가지지만, 경제보다는 도덕에 더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에 동조할 것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라는 것이

37) Liu Binyan, 앞의 글, 246면.

38) Robert Scalapino의 모델에 기원을 두는 이 개념에 대한 논의는 Denny Roy, "Singapore, China, and the 'Soft Authoritarian' Challenge", *Asian Survey* (March 1994) 참조.

다.³⁹⁾

이러한 체제를 가장 열심히 선전하는 국가는 싱가포르인데 그들은 이것이 바로 '아시아적 민주주의'로서 서구와 아시아의 정치전통의 장점을 결합시킨 것이며 그 현실적인 모델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라고 강조한다. 그들이 말하는 아시아적 민주주의는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자유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고 민생을 보증하는 '좋은 정부'를 뜻한다. 아시아에서는 인권이나 민주주의보다는 '효율적이고 정직한' 정부가 필요한데, 민주주의가 반드시 좋은 정부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본 빈리핀의 민주화와 사회적·경제적 침체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중국 농민이 문제삼는 것이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인플레·부채·부정의 해소 이므로 민주주의라는 이유 자체는 오히려 농민의 민생 문제를 가릴 수 있다는 주장은 '탄력적 권위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설명틀이다.

그들은 경제발전에 고무되어 문화적 자긍심을 품게 되었고 그러한 문명의 자각과 경제적 성장의 원천을 자신의 고유한 전통과 제도에서 찾으려 한다. 여기에서 그들이 유교적 가치관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따라서 유교문화권 즉 동아시아가 일단 그 주축이 된다. 이런 문화적 측면은 바로 뒤에서 따로 검토될 터이니 잠시 절여둔다면, 과연 '탄력적 권위주의'가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동아시아인들의 '대안적인 정치적 언어와 이데올로기'로서 존속하고, 더 나아가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아시아지역이 세계 권력의 새로운 중심이 된다면, 아마도 '타근대권위주의'가 그 일부가 될 아시아적 담론이 해계모니적 담론으로 위세를 갖지 못하리란 법이 없다. 그러나 현존하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위계질서 안에서 그나름의 '근대화위계'를 성립시킨 아시아가 정상에 오를 전망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⁴⁰⁾ 또한 아시아지역 내에서 같은 권

39) Francis Fukuyama, "Asia's Soft-authoritarian Alternative", *New Perspective Quarterly* (Spring 1992), 60면.

40) 정장연, 「NIEs 현상과 한국자본주의」, 『창작과비평』 1992년 가을호, 단락은 "진지구적 자본주의 속에서 아시아·태평양적인 亞歐性을 강조하려는 시도"라는 개념 규칙에 새겨져 있는 구미의 해계모니를 더욱 무각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고 본다. 아리프 덜릭, 「아시아·태평양권이라는 개념」, 『창작과비평』 1993년 봄호, 특히 314면.

위주의라 해도 '탄력적 권위주의'와 '경직된 권위주의'의 구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다원주의로 돌아가는 방향에 있는 국가도 있을 정도로 차이가 심한 형편이다. 결국 '탄력적 권위주의'는 '경직된 권위주의'로 물려 앉을가 아니면 정치적 다원주의로 나아갈 과도기적 성격이기 쉽다 하겠다.

이같은 성격은 이 글의 주제인 인권이란 시각에서 볼 때 더욱 뚜렷해진다. 아시아 내부에서도 "아시아의 독특한 인권철학을 강조하는 것은 특정 지배엘리트가 기존의 통치수단을 온존시키기 위한 완전한 정치적 책임이다"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들린다.⁴¹⁾ 이에 대해 재야가 인권을 들먹이는 것은 정치투쟁의 과정에서 그들의 정치적 신조를 달성하기 위한 수사(修辭)일 뿐 그들 역시 일단 정권을 잡으면 통치의 현실에 부딪쳐 그러한 수사의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는 맞공격도 가능하다.⁴²⁾ 물론 인권을 정치화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탄력적 권위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인권 주장이나 정치적 민주화 요구조차 허용하지 않고 반일 허용하면 자칫 국가안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 일쑤이니 그 경제성장의 입적 자체도 취약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이 보장한다고 자부한 생존권 즉 집단적 인권 자체가 그리 견고한 것이 못된다.

실제로 90년대에 들어서 중국 농민들은 경제성장의 뒤안에서 회생당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직전이라는 지적까지 나온 정도이다. 재정이 부족한 지방 당국이 과중한 조세부담을 떠맡기는데다 계속 뛰는 공산품 가격에 비해 낮은 농산품 가격으로 인해 소득을 올리기 힘든 농민은 경작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들 중 도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기대하고 전국을 떠도는 수가 10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들이 분노를 표출할 제도적 장치를 갖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제2의 천안문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학생이 아니라 빈부 격차에 분노한 노동자와 동맹한 농민이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⁴³⁾ 따라서 과연 경제성장을 위해서 권위주의체제가 요구되는데, 그리고 인권의 실상은 정말로 성장을 채운시키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바로

41) 악명을 요구하는 친리핀 관리의 인터뷰, Michael Vatikiotis and Robert Delfs, "Cultural Divid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17, 1993, 20면.

42) Bilahari Kausikan, 앞의 글, 36~37면.

43) Liu Binyan, 앞의 글, 243~244면.

개인의 정치적 권리와 집단의 생존권을 분리할 수 없다는 인권 개념의 인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인권론에 깊이 영향 미치고 있는 동서문화간의 차이란 설명들에 대해 검토할 차례가 되었다. 이것은 방금 살펴본 '탄력적 권리주의'가 대안적 정치언어로서의 보편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전망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쟁점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 핵심은 서양의 전통은 개인을 중시하나 중국과 같은 동양은 집단을 소중히 여긴다는 설명이다. 말하자면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서로 대립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중국처럼 유교적 전통문화에 뿌리를 둔 사회에서는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편 익숙하므로 개인의 정치적 권리보다는 민족(국가)공동체의 생존권이 우선시되고, 자유보다는 책임을 앞세우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듯 인권관에는 동서간 문화전통의 차이가 엄존한다.⁴⁴⁾

이러한 동서문화의 양분법은 아주 낯익은 발상인데, 낯익은 만큼 상투적이고 거친 이야기다. 서구의 한 인권운동자가 적절히 지적하듯이 서구 정치사상의 전통에도 공동체적 흐름이 분명히 있을⁴⁵⁾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사상에도 개인주의로 포착될 수 있는 요소가 없을 리 없다.⁴⁶⁾ 더 근본적인 문제는 동과 서라는 구별이 해당 초객관적인 자리 개념이라기보다는 문명론적인 의미를 함축한 것으로서 근대 이래 서구로부터 강요된 '근대'를 수용·극복하려는 역사적 상황의 필요에 따라 아시아인들이 고안해낸 지역개념이라는 것이다.⁴⁷⁾ 따라서 누가 어떻게 인권관과 관련된 동서간의 차이를 설명하는가에 일차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금 거론한 서방의 인권운동가는 아시아인이 조화를 추구한다지만 그것은 그 사회가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놓았을 때 가능하지 그렇지 못할 경우 대개는 정부가 오히려 자연스런 '조화를 방해'하고 '합의를 강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⁴⁸⁾ 따라서 인권에 관한 문화

44) 楊道, 「人權觀和中西文化傳統差異」,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2-3.

45) Aryeh Neier, 앞의 글, 43면.

46) 장자나 선종불교의 사상에서 개인주의적 요소를 찾는 연구들이 있다. 물론 이것이 서구적인 의미의 개인주의 그대로는 아니다. 이백후, 『중국 현대사상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1992, 57면.

47) 아리프 딜릭, 앞의 글 참조.

적 차이라는 것도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권리주의 정권이 조장하는 것이므로 인권운동단체와 정부 간의 쟁점이 아니라 정부와 그 국민 간의 쟁점이라 하겠다.⁴⁹⁾

여기서 필자가 여러 문명간에 존재하는 차이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양자의 차이를 사회적으로 차별화하는 태도를 문제삼자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근래 비상한 관심을 모으는 세缪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이 지난 한계의 일면은 인권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설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 양극을 축으로 한 냉전질서가 붕괴된 이후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를 새롭게 해명하기 위해 문명권을 축으로 한 세계질서를 전망하는 그의 발상이 인신 다원적인 농심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특히 유교문명권과 이슬람문명권의 결합을 서구문명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봄으로써 유교문명권의 잠재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하다. 하지만 그것이 냉전시대의 유산인 '힘의 갈등이란 깨려다임'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미국 우위의 세계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란 한계는 이미 충분히 비판된 바 있다.⁵⁰⁾ 이 글에 직접 관련된 문제점만을 잠깐 언급한다면, 문명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은 권리주의 국가의 지배력이거나 그곳의 전체인민과 다수 지식분자가 아닌데도 양자를 혼동해 문명의 충돌을 말하고 있다는 중국인의 비판은 귀담아들을 만하다.⁵¹⁾ 더욱이 헌팅턴은 문명을 주어진 전통적 가치에 엄격히 묶여진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각 문명이 독자적 전통의 산물(및 포로)이라면 초문화적 판단이나 행동의 기반은 존재할 수 없"게 되고 만다.⁵²⁾

전통문화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전통문화 속에 담겨진 생생한 원초적 자료는 (국지적·전지구적 환경에 둘러싸인) 현실적 요구에 따

48) Aryeh Neier, 앞의 글, 43면.

49) Pierre Sane, "Human Rights and the Clash of Culture", *New Perspective Quarterly* (Spring 1992).

50)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Vol. 72, No. 3(Summer 1993) 및 이에 대한 5편의 논평문이 실린 같은 잡지의 Vol. 72, No.4(September-October 1993) 참조.

51) 劉軍寧, 「特別價值與普世價值之間——文明衝突的另一面」, 『二十一世紀』 1994년 2월호, 130면.

52) Richard E. Rubenstein and Jarle Crocker, "Challenging Huntington", *Foreign Policy* (Fall 1994), 120면.

52 특집: 동아시아, 근대와 탈근대의 과제

라 활용되는 쌍방통행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인권관을 새롭게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될 레퍼토리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그중 어떤 요소를 미화(내지 특권화)하면서 서구의 근대를 극복한다고 주장하고픈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⁵³⁾ 아시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근대와 탈근대의 과제를 결합시키려는 진지한 자세이다.

예를 들어, 개인과 (민족)국가라는 양분법적인 설명들에 가려져온 '직능집단의 자율적 결집'의 전통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적어도 청조 말기 이래 대두되어 1920년대 전반기까지 활력을 더해갔던 그같은 흐름이 30년대 이래 굽절되었지만 그것은 개인과 국가의 이분법적 설명들을 극복하기 위한 중간형으로서 충분한 의의를 갖는다. 자율적 결집의 흐름 가운데 학생·여성·상인·농민·노동자 등의 집단으로서의 권리는 개인의 정치적 권리가 아닌 이른바 '집체인권'의 틀 속에서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으며, 진전에 따라서 그 틀 자체까지 변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⁵⁴⁾

이와 더불어, 30년대 초 중국현대사에서 재기되었던 '인권논쟁'의 전통도 비록 현실 속에서 억압된 역사적 가능성이지만 이를 다시 포착하는 것이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국민당의 일당독재(訓政)를 비판하면서 서구로부터 수용한 개인의 정치적 권리 즉 '인권'을 보편적 차원에서 옹호한 호적(胡適)⁵⁵⁾ 등의 노력은 '중국 특색적 인권'을 주창하는 오늘날의 중국인에 의해 "중국 혁명투쟁의 비법(非法) 상태에서" 제도화되지 못한 중요한 유산으로서 상기되고 있다.⁵⁶⁾

53) 대표적인 예로 가족윤리를 유난히 강조하는 李光耀을 들 수 있다. 그는 문화를 '운명'처럼 대하는 것 같다. Fareed Zakaria, "Culture Is Destiny: A Conversation with Lee Kuan Yew", *Foreign Affairs* Vol. 73, No. 2 (March-April 1994) 참조.

54) 이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출고 「중국에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나?: 역사적 관점에서 본 민간사회의 개혁」, 『아시아문화』(한림대) 제10집(근간) 참조.

55) 閻宇基, 「中國에서의 胡適思想: 미완운동(1954~55)」, 『現代中國과 中國現代史』, 지식산업사 1981 참조.

56) 沈其之, 「中國現代化與人權」, 『社會科學戰線』, 1993-2.

4. 맷음말

인권의 개념 규정을 비롯한 인권에 관한 논의가 때때로 정치화되었으며, 그것이 어떤 설명들을 빌리든 근대사에 대한 체험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체험의 차이를 포함한 인권의 보편적 기준이 적어도 선언적으로는 어디서나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아주 넓은 의미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옹호하는 개념이 되었다. 따라서 주체도 개인·집단·국가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확장된 인권 개념은 자본·노동·지식정보의 교류에 의한 지구화현상에 힘입어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적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인권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들린다. 인권 준수가 고르지 못한 상황은 "역사적 자본주의의 산물로서 이 체제 안에서는 인권이라는 것이 어떤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바로 특권에 대한 보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민족)국가는 저마다 능력을 발휘해 자본주의체제 안에서 상승하여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처럼 천명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문명의 '신화'일 따름이라고 한다.⁵⁷⁾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만 해도 근대사에 편입된 당초부터 상당수 엘리트들은 부강한 국민국가를 모델로 삼아 이를 향한 경주에 전력을 다했다. 이 과정에서 세국주의와의 전쟁(또는 그 '국내대리인')이나 그 연장인 (동서)진영간의 대립이란 위기상황은 국가가 주도한 자원동원을 꾀 효율적이게 했다. 그러나 탄생전의 시기인 지금은 예전처럼 인권을 소홀히 다룰 수는 없게 되었다. 이 때문 주가 경쟁력이 자원동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능을 어느정도는 대신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한 국가가 '역사적 자본주의' 안의 경쟁에서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앞서간다 해도 그 '발전'은 국내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다른 나라의 희생 위에서 이뤄진 것이기 쉽다.

이와 같이 국가를 축으로 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포괄

57) 이매뉴얼 윌리스턴,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의 문명」, 『상작과비평』 1993, 139~42면.

적인 인권 개념의 구성요소에 대한 강조의 차이에 따라 보편과 특수의 논란도 계속될 것이고, 그때 (아주 느리게 변화하며) 구성원들 대부분의 초자아의 일부가 되어온 바로 그) 문화의 차이가 양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손쉽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의 앞에서 이뤄진 분석은 그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어느정도 돋울지지만, 좀더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보편과 특수의 대립을 넘어설 수 있는 실천적 기준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보편과 특수라는 낡은 발상이 문화(또는 문명)에 근거하고 있는만큼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가 적절한 분석단위라고 여겨진다. 동아시아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서 세계체제적인 시각과 국지적 시각 간의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필자는 '동아시아적 전망'으로 이름붙여보고 싶다. 한반도 남쪽에 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동아시아의 상호연관성이 날로 긴밀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유럽이 그렇듯이, 세계체제의 일부인 동아시아도 다양한 국가와 사회로 구성된 동아시아지역체계로 파악하는 발상이 필요하다.⁵⁸⁾ 지금 필자로선 더 이상의 체계화는 며칠 일로, 위의 본문은 어설프나마 그런 발상에서 써야 진 것이라 하겠다.

같은 문화권에 속하면서 서로 다른 현실적 여건에서 어떻게 인권을 해석하는지를 따져보는 일은, 분단된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인권논의는 서양의 '보편'에 대한 방어적 자세를 보이고 그것을 배제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방금 위에서 말한 낡은 의미의 인권을 보편적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되 거기에 어떤 특수성이 덧붙여져 보편성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상황에 동아시아적 전망을 적용하자면, 남한의 인권관과 북한의 인권관을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공통된 인권관에 비춰

58) 우리 사회에서 (불법) 취임한 현대동포와 동남아인 및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 노동자의 인권문제, 중국의 환경오염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원전레이온의 중국 진출 시도 같은 공해산업 수출이 야기할 수 있는 환경파괴는 '동아시아적 전망'을 갖고 대처해야 할 영역이다. '동아시아적 전망'은 같은 실천을 이끌겠지만 동시에 이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될 것이다.

이면 특색을 통해 보편적 인권을 더 잘 살리고 있는지, 또는 결여된 점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남한 특색의 인권이나 북한 특색의 인권이 아니라 남한 특색의 인권이나 북한 특색의 인권이어야 한다. 사실 어떤 통일이든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라면 한반도 주민 전체의 (물론 넓은 의미의) 인권 신장으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그간 북한의 인권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유별나게 정치화하려는 세력은 물론이거나 진보진영 역시 편협한 인권관을 지닌 게 아니기 싶다.⁵⁹⁾ 남한의 인권운동이 다시 활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분단을 하나의 '제세'로 파악하면서 남·북한 인권을 보는 민족민주운동진영의 독자성이 필요하다는 통찰에 귀기울여봄직하다.⁶⁰⁾ 여기서 이에 대해 길게 거론할 이유는 없겠고 다만 북한(당국)과 남한(당국) 간의 인권논쟁이 본격화되면 양측의 실명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이 글에서 그에 대한 평가에 한반도의 인권문제에 대한 암시를 담고자 했다. 다만 중국은 국제무대에 이미 들어와 있어 인권논쟁이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다르다 하겠다. 북한당국을 '악마'로 보고 빨리 무너뜨리는 길만을 추구한다면 모를까 협상의 현실적인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방금 전술을 본 북미협상은 (넓게 규정된) 인권문제의 거론을 위해서도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인간 개개인에 가장 절실한 인권의 잣대로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가늠하고 그것을 통해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상하는 일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59) 북한의 인권문제를 보는 기왕의 시각은 '지옥'으로 보는 것이 한 국단이라면 다른 국단은 항일과 자주의 민족정통성을 지닌 집체적 인권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아니면 이에 실제에 접근한 자료가 없다거나 내정문제란 이유로 소극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 않다. 비교적 온전한 시각은 '바람이 아닌 햇빛'을 통한 인권개선을 추구하자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남한이 평화와 군축의 방향으로 나아가 북한의 부시와 경제발전을 도우면 인권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경제협력을 해주면 억압적인 북한 체제의 유지에 도움밖에 안된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60) 백낙청, 「분단체제의 인식을 위하여」, 39면.

특집 : 비엔나인권대회와 한국 인권의 현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

이 대 훈
천주교 인권위원회

1. 세계인권대회 개최 배경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를 제외하고 최근의 국제질서가 얼마나 급격히 변동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최근 2-3년간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변화양상은 이전의 반세기의 변화에 버금간다는 관찰도 근거없는 것이 아니다. 현재 국제정치는 이론상으로나 실천상으로나 과거에 제기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을 들려싸고 만족할 만한 답을 못 내리고 있다. 잘 짜여진 냉전시기에 비해서는 확연히 무정부적인 일종의 혼돈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95년 시한이 종료되는 핵확산금지협정(NPT)의 틀속에서 일부 강대국의 핵독점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 북한핵문제를 방폐막으로 삼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노력이나 쿠르드족,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등 난민 대이동과 점차 증가하는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노동력 이동 등 새로운 인구이동현상, 그리고 우르파이라운드협정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무역원리와 지역별 블록화경제논리가 갖게 되는 모순은 이러한 탈냉전 세계질서의 혼돈 혹은 무정부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현상들이다.

두 이념진영의 갈등과 대결이 원리가 되었던 냉전시대가 마감되자 그 이후의 과도기적 무질서, 그리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전망은 당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무엇을 뜻하는가는 사실상 국제문제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의 제1안건이 되었다. 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 11

로 이런 맥락에서 1991년 리우환경회의가 유엔의 주관하에 개최된 것이며, 또 지난해 6월 세계인권대회가 개최된 것이다. 그리고 1995년에 있을 「사회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인구와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카이로), 여성과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북경)도 성공여부와는 별도로 '무언가 새로운 계약'을 찾기 위한 시도들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유엔의 기구개편이나 유엔사무총장이 대변하는 유엔의 집행력 강화론, 그리고 유엔안보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조직의 민주화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 평화운동측에서도 1995년 NPT 이후의 새 핵확산금지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인권운동측에서도 이미 확정된 유엔 고등인권판무관제뿐만 아니라 보스니아의 전범들이나 과거 일본 전범들을 재판할 수 있는 국제인권재판소의 신설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울러 종군위안부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국제적 역할(유엔 안보리 가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냉전이후의 세계질서를 구상하는 하나의 세계회의로서 준비되었다. 드러난 모든 문제를 인권이라는 잣대로 평가하고 국제질서의 최소한의 인본주의적 원칙과 개선책을 정립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주최자인 유엔은 여전히 국력에 의존한 힘의 외교에 좌우되고 있고 국가 이외 범주의 조직들(이른바 비정부단체들)은 공동으로 무언가를 추진할 경험과 체계가 부족했다.

2.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본회의 경과¹⁾

가. 초기의 문제들

종종 이번 세계인권대회와 비교되는 리우환경회의가 지구를 보호하는 세계회의였다면 이번 회의는 인간을 보호하자는 세계회의였

1) 「2장. … 본회의 경과, 가, 나, 다.」는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유엔세계인권대회자료집」에 실은 필자의 원고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기타 민간단체회의와 문화행사에 관해서는 동 자료집과 박래근,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다녀와서」, 「정세연구」, 93년 8월호 참조.

다. 그리고 이 두 세계회의의 주제도 그러하거니와 앞으로 1995년까지 열릴 3가지의 세계회의(여성, 인구, 경제개발전략) 모두 신국제질서와 개발문제를 연결시키는 사고에서 출발하고 있다. 비엔나세계인권대회도 대회주제가 “인권-민주주의-개발”로 정해졌다. 비엔나 인권대회는, 178개국의 참여와 114명의 국가수반이 참여한 리우환경회의의 화려함에 비해서 각국의 장관급 주무관리 혹은 특사들의 참석만으로 조출하게 시작해서 조출하게 끝났다고도 할 수 있다. 비록 650여 민간단체가 참여한 리우회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2천여 개의 인권단체가 비엔나회의에 참석했지만 비엔나회의는 언론의 무시를 감수해야 했다. 인권이 포괄하는 범위로 볼 때 마땅히 크게 주목되었어야 할 인권대회는, 2년여에 걸친 준비회의(PrepCom)에서 나타난 각국간 의견충돌과 이해상충으로 인해 처음부터 어렵게 출발했다. 준비회의는 인권증진의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는 일보다 인권의 보편성이나 불가분성, 민간단체의 참여수준 등 형식과 개념에 대해 논쟁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마지막 준비회의(4차)는 완전한 실패, 즉 안전과 선언문 기초내용의 합의에 실패했는데, 이로 인해 민간단체들의 참여수준과 범위에 대해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기 직전까지 대단한 혼란이 있었다. 준비회의의 무성과, 그리고 민간단체들의 영향력 봉쇄노력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제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비엔나회의가 결과없이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이번 회의가 리우 환경회의와 다른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심판대에 오른 것이 국가(정부) 자체라는 사실이었다. “인권침해의 가장 중대한 원인으로서의 국가” — 이 문제를 국가들의 회의기구에 상정하는 자체가 모순이기도 하였다. 이것이 이번 인권대회를 매우 어렵게 만든 핵심 이유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란이 된 다른 주제들, 이를테면 민간단체의 참여범위, 지구 남북간의 경제격차와 정책실현능력상의 차이, 유엔의 민주화문제, 국제규범의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 등은 사실 모든 국제회의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어 제기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비엔나대회의 중요한 특징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정치적 성격, 즉 인권침해의 책임소재와 회의의 주체가 모순되게도 동일하다는 데에 있었

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이 애매했던 리우 환경회의가 환경문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의 수준으로 설정된데 반해 비엔나 인권대회의 격이 낮게 잡힌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사실상 인권문제는 외교적 조정의 문제로 처음부터 설정된 것이다. 이 점은 인권에 대한 세계 각국정부의 평균 기대치를 반영한 것이다. 인권문제는 환경문제와 달리 언제나 정치적인 문제였고 정부의 책임이 거론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치적 협상이 불가피한 주제이기도 했으나, 유엔을 구성하는 각국 정부는 이를 피하기도 어려웠지만 근본적으로 접근하기는 더욱 불가능한 일 이었다. 세계인권대회의 중심행사인 정부간 회의 즉 본회의는 이런 덜 레마의 높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 세계질서와 인권의 주제속에서의 국가’의 문제는 반드시 국가의 반면제로서 ‘민간(시민)사회’를 부각 시킬 수밖에 없었다.

소극적이고 꺼려하는 정부들을 국제인권회의의 자리로 끌어내린 장본인들은 사실 일부 논자들이 국제시민사회라고 일컫는 민간인권운동단체들과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인권전문가집단이었다. 리우 환경회의에서도 650여 민간단체들의 적극적 역할은 높이 평가되었다. 매우 어려웠던 이번 회의를 성사시키는데 수천개의 인권단체들이 노력한 바는 사실 유엔 자체의 노력보다 값지다고도 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등 지역회의(비엔나회의의 준비회의의 일환)에서 종합적이고 전보적인 인권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을 시종 일관 주도했으며 지역회의의 정부간회의에 참석해 무능력한 정부대표들을 압도했고, 성사 자체가 의심되던 이번 인권대회가 가능하도록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인권단체들이 이러한 적극성을 보였던 배경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인권침해의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엔나회의 전에 회람된 여러 문서에 나타난 공통의 문제의식을 살펴 보면, 이른바 국제시민사회가 발전시켜 온 인권과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해는 일국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정부대표들과는 질을 달리한다. 예를 들면 대다수의 인권단체들은 :

-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인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유엔의 조기경보 체계의 필요성
- 인권보호를 위한 유엔의 비상조치를 가능케 하는 정부들의 의지와 협조의 필요성
- 유엔의 평화보장활동에 인권보호조치를 필히 포함시키는 것
- 여성, 아동, 원주민에 대한 권리보장을 조속히 실시하는 것
- 각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감독하고 촉진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것
- 유엔의 인권활동 확대발전을 위한 여건(재정, 권한, 인원)을 확보하는 것 등에 대해 인권단체들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였다.

대부분 준비없이 참여한 정부들이 진행한 본회의는 사실 이렇게 미리 주어진 문제의식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정치적 협상을 전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나. 주요 논란과 진행경과

본회의는 각 정부가 온갖 수사학을 동원해 그럴듯한 입장을 밝히는 지리한 전체회의(Plenary)와 논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본위원회(Main Committee), 그리고 최종 선언문을 기초하는 문안기초위원회(Drafting Committee)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이중에서 아래에 요약된 논란과 실질적인 협상 및 갈등이 일어난 회의는 가장 중요했던 문안기초위원회였다.

<민간단체 참여의 범위>

본회의 이전부터 초기까지의 쟁점은 단연 민간단체의 참여허용 범위에 관해서였다. 유엔의 회의절차에 관한 논의에서는, 참여하려는 민간단체들이 너무 많고 산만하며 유엔의 운영상 정부대표에게 절대 우선권이 있다는 논지로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상당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정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 이에 대해 민간단체들은 본회의 전에 개최된 민간단체 회의(NGO Forum)에서 유엔의 규칙과는 무관

하게 필요한 경우 각국의 구체적 인권침해사실을 언급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또 정부간 회의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민간단체들에 대한 실무적 배려가 축소되고 티벳의 독립운동 지도자 달라이 라마 초청건이 중국정부의 압력으로 취소되는 등 민간단체에 대한 압력이 본회의 시작 이전부터 가시화되었고, 또 문안기초위원회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아예 배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본회의는 초기부터 형식·절차문제와 주변적인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단적인 예로 선언문 초안중에서 합의가 안된 200개 이상의 문안중에서 단 하나만이 첫날 하루종일의 토론에서 합의되었다.

<인권의 보편성 논쟁>

민간단체의 참여문제는 “달라이 라마 초청을 허용하되, 나라별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언급 불가, 전체회의시 민간단체에 최대한 발언기회 부여, 그러나 문안기초위원회에서 단 1회의 한해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한다”는 절충안으로 마무리되었다. 그후, 본회의의 두번째 쌍은 서방과 아시아 일부 국가간의 인권의 보편성 및 불가분성 논쟁으로 접어들었다. 국제인권법분야의 이 해묵은 논쟁이 비엔나회의의 발목을 잡은 사실에서, 인권문제가 각국 정부의 구체적인 관심에서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불룩간 외교전술로 사용된다는 인상이 강하게 풍겼다. 보편성 논쟁은 본회의 시작 3일째 미국이 중국등 일부 아시아국가(북한 포함)를 겨냥해서 “일부 극소수 국가들”이 비엔나선언의 문안기초 작업을 방해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이 처음부터 이 방해작업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극화되었다. 또 상당수의 서방 언론은 중국이 비엔나회의가 성과없이 끝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일종의 사보타지전전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중국은 상당수의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으며 중국이 인권의 보편성 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에 의견을 달리한다고 응수했다.

여기서 중국이 강조한 ‘인권규정의 적용방식’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보편적 인권규정이라도 각국의 국법(국가의 주권 규정)에 의거해 적용

되어야 한다는 주권우선의 원칙을 의미한다. 주권문제는 비서방국가들의 관심사만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쟁점화되지는 않았지만, 서방의 많은 나라들도 소수인종과 원주민들이 주장하는 자결권에 대해 기존 국가의 주권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국가간 협력에서는 항상 주권의 일부를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주권과 국제질서는 본질상 배타적인 관계만은 아니다. 강조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회의의 이러한 초기 갈등은, 인권을 앞세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서방의 국가들과 기존 국가주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인권문제를 내정의 문제로 국한하려는 일부 비서방국가들의 정치적 갈등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지키려는 나라들과 주도권이 아예 없는 나라들 사이의 싸움이었다.

<이슬람국가들의 공동전선>

인권이 블록외교전술로 이용되는 사례는 이슬람권과 서방의 줄다리기에서도 나타났다. 이슬람국가들은 보스니아사태에 대한 서방의 체계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분개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첫째, 유엔이 합의한 '일국의 구체적 상황 언급 불가' 원칙을 지키더라도 보스니아사태는 단순한 일국상황이 아니라 심대한 국제적 인권침해상황이기 때문에 비엔나회의에서 심각히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둘째, 걸프전과 다르게 비기독교측이 주로 희생당하는 보스니아사태의 경우 서방측이 이를 덮어두려는 의심이 제기된다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감을 배경으로 이슬람국가들은 이슬람협의기구(IOC: 회원국 51개)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이번 인권대회에서 인종말살책동에 대한 비난과 유엔의 무기금수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보스니아사태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이슬람국가들은 결국 미국과 영국 등의 저지노력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폐막 하루전인 6월 24일, 재석 143표 중 찬성 88표 반대 1표 기권 54표로 특별결의문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한다. 이 비서방측의 작은 승리는 탈냉전시기 미국 등 서방측의 인권외교의 한 실패를 상징한 것이라 그 영향력의 감소를 보여 준 것이기도 했다.

임하였다).

다. 본회의가 남긴 것들

높은 기대를 받으며 출발한 세계인권대회에 대하여 낙관한 사람들은 이 회의가 세계질서의 변동을 기념하리라는 희망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번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회의자체로는 결코 성공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그러나 이 모임은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잣대로 현재의 세계질서가 어떤 상태인가를 가늠케 하는 역할을 했다. 보스니아사태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갈등, 심화되는 지구 남북간의 갈등과 아시아 대 서방의 갈등, 정부들의 무능력과 민간단체들의 선도적 역할 등을 현재 세계사의 여러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다-1 <공통 인식>

온갖 논쟁과 견해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엔나회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에 대한 공통인식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1) 유엔의 역할과 기능

- 유엔은 현재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활동을 중심으로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
- 유엔은 인권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하며, 각 회원국의 책임과 역할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유엔은 민간단체들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 유엔인권센타가 앞으로 매년 각국 인권상황을 다른 종합적인 인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간해야 한다.

(2) 정부의 역할과 책임

- 회원국 정부는 인권제도의 개혁, 인권증진활동, 이에 대한 예산화 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임해야 한다.
- 유엔개혁을 주장한 정부들은 자국내 인권증진에 대해 남달리 노

<고등인권판무관제의 신설>²⁾

비엔나대회가 시작되기 전, 많은 인권단체들은 국제사면위가 공식 제안한 고등인권판무관제가 이번 회의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 문안기초위원회가 이 주제에 대한 논의와 협상을 시작한 것은 6. 25일 새벽이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200여 가지의 불일치점에 대한 사소한 탐색을 찾는데 모든 일정을 소비한 데 있었다. 그러나,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슬람국가들은 고등인권판무관이 서방의 영향력 아래서 서방의 인권정치에 다시 한번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즉, 유엔의 민주적 개편 없이 함부로 유엔의 강화를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이 '새로운 제도보다는 사무총장을 한 명 더 두어 인권관계 모든 활동을 조정하고 확대하는 책임을 주자'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³⁾ 한 것도 중요한 반대로 작용하였다. 유엔을 강화하는데 은근히 반대하는 강대국들도 이 의견에 우호적이었다. 미국이 소말리아파병 평화유지군의 독자지휘권을 최근 주장한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현재 흐트러진 국제질서에서 권한이 강화된 유엔보다는 강대국이 쉽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느슨한 유엔이 더 구미에 맞았던 것이다.

유엔의 민주화라는 매우 어려운 주제와 연관된 이 논의는 시간상의 제한이라는 명분을 얻어 차기 유엔총회에 이관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그 후 93년 12월 유엔총회는 고등인권판무관제 신설을 결의하고, 전 애파도르 외무장관 호세 아얄라 라쏘씨를 고등인권판무관으로 선

2) 고등인권판무관제 등 국제사면위의 공식제안내용에 대해서는 'Facing Up to the Failures...., AI Index:IOR 41/16/92, amnesty international 참조.

3)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이번 인권대회를 준비하는데 무능력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가 1993. 6. 10 위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새로운 관료제, 고등직책 그리고 상설포럼에 관한 안은 융통성과 순풍이 필요한 때 단지 불만과 저항을 불러 일으킬 뿐이다"고 말해 NGO들의 커다란 반감을 샀다. 갈리 사무총장의 이같은 의견은 새로운 제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암묵적인 의사와도 같다.

력해야 한다.

- 정부는 인권문제를 다른 정치적·경제적 문제와 연관시켜 회피시켜서는 안된다. 개발과 민주주의가 인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해도 이는 각각 별도로 고찰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3) 민간단체(비정부단체)의 역할

- 각국 및 지역차원 민간단체들은 서로의 협력을 증진하고 유엔무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현재 정부들간의 견해차이와 이해관계의 불협화음을 고려할 때 특히 현재의 시기에 민간단체들이 인권문제를 전면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해야 한다.
- 민간단체들은 인권 A, B 규약에 나타나 있는 인권의 이상적 목표를 아무 현실적 구애없이 적극 실천하는 역할을 가진다.

초기의 우려와는 다르게 이러한 공동인식이 형성되면서, 비엔나회의는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의 절충과 협상을 거쳐 공식 선언문인 「비엔나 선언과 행동 강령」⁴⁾을 채택하는데 성공했다. 이 선언문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한 평가(사실상 국제인권운동의 퇴보라는 평가)로부터 조용한 만족까지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리우환경회의에 대한 평가도 아직 요원하듯이 중요한 국제회의의 결과는 실행하는데에도 그렇고 평가하는 데에도 꽤 오랜 시일이 걸린다. 단, 인권대회의 진행사항과 선언문의 내용만을 기초로 해서 볼 때, 회의 마지막 날인 6월 25일 밤 11시 55분경 폐회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다음과 같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남겼다고 요약할 수 있다.

다-2 <성과>

- 무엇보다도 일정하게 새로운 내용을 담은 비엔나선언을 채택하는데 결국 성공하였다.

4)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유엔세계인권대회 보고서」 참조.